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맥쿼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등급평가는 맥쿼리자산운용(주)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외부평가기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객관적인 등급평가는 아닌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유자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유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유자회사 (펀드코드 : 35801)
(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사
(Macquarie Korea Asset Management Co., Ltd.)
3. 판매회사 :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이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작성기준일 : 2024년 08월 2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년 08월 2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무액면 보통주 43,140,638주
[모집(매출) 총액 : 499,999,994,420원(예정)]
발행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무액면 보통주
정관상 발행예정총수 : 사십억(4,000,000,000)주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구주주 청약 : 2024년 10월 04일 ~ 07일

일반공모 청약 : 2024년 10월 10일 ~ 11일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A동 18층
(공평동, 센트로폴리스)(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사무실)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삼성증권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자들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회사")에 대한 투자 판단 시 본 문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투자위험등급(6등급 중 4등급에 해당하는 보통 수준)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 및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투자위험등급 평가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인 맥쿼리자산운용(주)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외부 평가기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객관적인 등급평가는 아닌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및 (예비)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투자자가 주식과 관련한 위험 등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책임 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거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회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및 (예비)간이투자설명서 상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회사가 현재 투자 및 투자약정(이하 총칭하여 "투자")한 총 20개의 사업(2024년 6월 30일 기준 기 투자한 19개의 사업 및 2024년 7월 30일에 투자 약정했다고 발표한 하남 데이터센터 사업 포함, 이하 동일)은 각 사업이 속한 환경,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원금을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

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투자금의 상환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7. 회사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유동성 제공을 위해 공모주식이 상장되어 거래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금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회사의 투자성과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인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의 투자 실적과 무관하며,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본 건 공모주식의 위탁판매 업무(모집 및 매출 업무)만 수행할 뿐 이 회사의 가치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및 (예비)간이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하여 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본 건 공모주식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요청 또는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4년 08월 13일부터 2024년 09월 30일까지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12. 본 문서에 기술된 재무 수치들은 달리 기준일이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4년 06월 30일 기준입니다.

책임제한

회사에 대한 투자는 맥쿼리자산운용(주), 맥쿼리그룹, 기타 맥쿼리그룹 계열(이하 총칭하여 "맥쿼리")에 대한 예금이나 채무가 아니며, 투자원금이나 수입의 손실 또는 환급 지연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노출됩니다. 회사와 맥쿼리는 회사의 실적, 원금의 환급 또는 회사 주식에 대한 특정 수익률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홍콩 법률인 증권선물규정(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Cap. 571, 이하 "홍콩증권선물규정")에 따른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의 승인을 받은 바 없으며, 그 예정 또한 없습니다. 본 문서에 대한 승인, 또는 본 문서 또는 본 문서와 관련하여 발행된 기타 문서의 배포에 대한 허가를 위한 조치를 홍콩에서 취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홍콩증권선물규정에서 정의된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자에게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 예정 또한 없습니다.

오로지 홍콩 외 지역에 거주 중인 자 또는 홍콩증권선물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의된 전문 투자자에게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를 하거나 그렇게 할 목적을 제외하고는, 홍콩 내 또는 홍콩을 목적으로 한 기타 지역에서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와 관련한 광고, 권유서, 또는 문서가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예정 또한 없으며, 나아가 그 내용이 홍콩 내 일반인에게 접근 가능하다거나 홍콩 내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단, 홍콩 증권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예외).

본 문서의 내용은 홍콩 규제 당국의 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안과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본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독립된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본 문서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에 투자설명서(Prospectus)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는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관련한 싱가포르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상 법정책임과 관련한 규정(싱가포르 증권선물법 Chapter 289)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투자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싱가포르 증권선물법 제286조에 따라 승인

된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가 아니며 싱가포르 증권선물법 제287조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인정된 집합투자기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본 문서 및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와 관련한 기타 문서 또는 자료는 싱가포르 내에서 "기관투자자"(싱가포르 증권선물법에서 정의) 또는 싱가포르 증권선물법 관련 규정 및 그 조건에 따른 자 외의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포 또는 배포될 수 없으며,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본 문서는 이를 제공받은 자가 "기관투자자"(싱가포르 증권선물법에서 정의)임을 전제로 제공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아닌 경우 본 문서를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본 문서는 본인 외에 싱가포르에 있는 어떠한 자에게도 전달되거나 유포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본 문서는 제3자에게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를 할 목적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내 재판매 제한과 관련한 싱가포르 증권선물법 규정을 숙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주식은 스위스 내에서 판매될 수 없고, 스위스 증권거래소(SIX Swiss Exchange) 또는 스위스 내 기타 증권 관련 거래소 또는 규제거래소(regulated trading facility)에 상장될 예정도 없습니다. 본 문서 또는 기타 주식의 청약 권유 문서는 스위스 금융서비스법(Swiss Financial Services Act, 이하 "FinSA")상의 투자설명서 또는 그와 유사한 통지나 스위스 내 증권거래소 또는 규제시장의 상장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오로지 본 문서를 제공받은 자 그 당사자만을 위한 것이며 스위스 내에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문서 또는 기타 주식의 청약 또는 마케팅 관련 자료가 스위스 내에서 일반 대중에게 배포되거나 여하한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게 접근 가능해서는 아니됩니다. 주식의 청약은 FinSA 제4조 제3항에 정의된 전문투자자(professional clients)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본 문서,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와 관련된 제안서 또는 마케팅 관련 자

료는 스위스 규제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검토기관에 제출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그 예정 또한 없습니다. 특히 본 문서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에 제출되지 아니할 예정이며, 따라서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에 대한 제안 또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의 감독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나아가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에 대한 제안은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스위스 연방법(Swiss Federal Act 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이하 "CISA")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바 없으며 그 예정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CISA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보유한 자에게 제공되는 투자자 보호는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발행할 신주인수권 및 주식(이하 총칭하여 "회사주식")은 1933년 미국 증권법(이하 "미국 증권법") 또는 그 외 적용 가능한 미국 내 모든 주의 증권 관련 법령(이하 총칭하여 "미국 관련 법령")에 따라 미국 내에서 등록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등록될 예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면제받았거나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주식은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1940년 미국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등록될 예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매도와 회사가 발행하거나 발행한 주식에 대한 청약 및 매매는 미국 증권법 Regulation S(미국 외에서의 증권 거래에 대한 규정)에서 정의된 "해외 거래(Offshore Transaction)" 방식에 따라 미국 외에서 비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만 허용됩니다. 실권주 일반공모의 경우에 한정하여, 미국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에 의한 제한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그러한 투자가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구나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맥쿼리은행을 제외한 본 자료에 언급된 어떠한 기관도 호주의 은행법(Banking Act 1959)상 인가된 예금수취기관이 아닙니다. 이들 법인의 채무는 맥쿼리은행(ABN 46 0 08 583 542)의 예금이나 부채가 아닙니다. 또한 맥쿼리은행은 이들 법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을 하거나 기타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나 예측 등의 정보(이하 "미래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맥쿼리는 미래예측정보가 정확하거나, 추후 달성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 공개된 미래예측정보가 기반한 가정이 합리적이라는 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손실위험을 수반하며, 투자전략이나 투자목표의 달성, 또는 투자자의 투자수익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35801

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는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회사	-
나. 운용자산별 종류	특별자산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아니한 투자회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회사)
마. 특수형태 표시	-	-
	-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

* 자세한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가액 ¹	모집총액 ²	모집방법
기명식보통주	43,140,638	무액면	11,590	499,999,994,420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¹ 이사회결의일 : 2024년 08월 12일

² 모집총액은 예정 모집가액에 증권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모집가액 산정 방식

금번 유상증자 시 모집가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따릅니다.

(舊)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한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예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및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① 예정 발행가액 산정: 이사회결의일(2024년 08월 12일) 직전 거래일(2024년 08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은 2.8%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text{▶ 예정 발행가액} = \frac{\text{기준주가} \times \text{【1 - 할인율(2.8\%)】}}{1 + \text{【증자비율(9.90\%)} \times \text{할인율(2.8\%)】}}$$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4년 08월 09일

(단위 : 주, 원)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 래 금 액
1	2024/07/10	12,140	1,105,483	13,391,452,780
2	2024/07/11	12,080	1,125,673	13,607,125,910
3	2024/07/12	12,080	967,757	11,678,133,530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금액
4	2024/07/15	12,040	1,098,542	13,222,564,540
5	2024/07/16	12,110	637,945	7,698,949,190
6	2024/07/17	12,090	749,013	9,063,231,650
7	2024/07/18	12,060	642,209	7,744,136,680
8	2024/07/19	12,050	680,420	8,189,372,880
9	2024/07/22	12,160	746,578	9,027,353,350
10	2024/07/23	12,060	731,886	8,823,186,650
11	2024/07/24	12,050	349,380	4,207,390,440
12	2024/07/25	11,990	826,671	9,906,262,290
13	2024/07/26	12,030	566,451	6,798,350,800
14	2024/07/29	12,060	529,852	6,389,286,400
15	2024/07/30	12,120	416,113	5,031,917,670
16	2024/07/31	12,310	1,171,036	14,356,976,080
17	2024/08/01	12,300	686,476	8,445,372,340
18	2024/08/02	12,140	877,050	10,683,455,000
19	2024/08/05	11,590	4,029,210	47,358,457,660
20	2024/08/06	11,990	1,776,088	21,190,445,460
21	2024/08/07	11,920	1,598,802	19,075,447,620
22	2024/08/08	11,920	772,218	9,203,566,820
23	2024/08/09	12,010	558,705	6,695,568,610
1개월 가중산술평균(A)		12,003		
1주일 가중산술평균(B)		11,852		
기산일 종가(C)		12,010		
A,B,C의 산술평균(D)		11,955	[(A)+(B)+(C)]/3	
기준주가[Min(C,D)]		11,955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2.8%		
증자비율		9.90%		
예정발행가액	11,590	$\text{예정발행가} = \frac{\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1 + \text{증자비율} \times \text{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②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8월 28일) 전 제3거래일(2024년 08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은 2.8%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text{▶ 1차 발행가액} = \frac{\text{기준주가} \times \text{【1 - 할인율(2.8\%)】}}{1 + \text{【증자비율(9.90\%)} \times \text{할인율(2.8\%)】}}$$

③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 초일(2024년 10월 04일) 전 제3거래일(2024년 09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은 2.8%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text{▶ 2차 발행가액} = \text{기준주가} \times \text{【1 - 할인율(2.8\%)】}$$

④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3편 제3장의2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를 준용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text{▶ 확정 발행가액} = \text{MAX}[\text{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text{기준주가의 60\%}]$$

⑤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24년 08월 23일에 결정 및 2024년 08월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24년 09월 30일에 결정되며, 2024년 10월 0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및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kif.co.kr>)에 공고됩니다.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기 모집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조달되는 자금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분	금액
모집 총액(1)	499,999,994,420
발행제비용(2)	3,367,199,962
순수입금 [(1)-(2)]	496,632,794,458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총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은 우선적으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24,999,990	모집총액의 0.005%(10원 미만 절사)
인수수료	1,499,999,983	모집총액의 0.3%
대표주관수수료	999,999,989	모집총액의 0.2%
		모집총액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인 경우

구분	금액	계산 근거
상장수수료	17,990,000	(2,997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 3 10억원당 수수료율 산정시 10억원 미만의 금액은 올림
발행등록수수료	1,000,000	주식(신주인수권증서 및 보통주에 대해 각 50만원 발생) 1,000주당 300원(상한: 50만원/ 하한: 4천원)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부여수수료	10,000	정액
인쇄 및 발송비	70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신주배정통지서 인쇄비 등
기타비용	123,200,000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자문 비용
합계	3,367,199,962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발행제비용은 모집가액의 확정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보통주
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인쇄 및 발송비와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상기 발행제비용은 일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유상증자 방식 적정 여부 검토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 및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며, 「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5, 자본시장법 제196조와 회
사의 정관 제16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
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그 방법으로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 ①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 ② 투자회사는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新株)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③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방형투자회사”라 한다)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형투자회사는 제3호의 방법에 따라 확정된 매일의 발행가액을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신주의 발행기간
 2. 제1호의 발행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3. 제1호의 발행기간 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 ~~⑤ 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에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그 투자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⑥ 제194조제7항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인수인에게 준용한다.
- ⑦ 주식인수인은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정관」

제16조 (신주의 발행)

- ① 회사가 본 정관의 효력발생일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 한다.
 1. 발행하는 신주의 수

2. 발행가액 및 주금 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 ② 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주식배정의 수는 납입금액을 1주당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 ③ 본 정관에서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로서 한국의 은행의 영업일을 말한다.
- ④ 주식의 청약 단위는 일주 단위로 한다.

또한,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 민간투자법 제 4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06조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데 있어 아래의 법규 및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항부터 제4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및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20조(주식청약서),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및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상 공모 관련 일체 규정

따라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일반적으로 따라야 하는 발행 및 배정방식을 적용 받지 않으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에 부여되는 집합투자증권 추가발행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주의 신주인수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① 법 제165조의16 및 영 제176조의17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절에서 "주주배정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을 말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을 말한다.
-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 ④ 이 절에서 "거래일"이란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거래하는 날을 말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 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거나 외자유치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3. 금산법 제12조 및 제23조의8, 「예금자보호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회생계획 등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6.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3자배정증자방식(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 가.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우
 - 나.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는 경우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수요예측(대표주관회사가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공모가격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및 물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광고)

-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기재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기재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① 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②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 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②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 ①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0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상장회사의 유상증자에 관한 규정 대다수가 회사에 적용되지 않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거래일 기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은 6,484.22원인데 반해, 회사의 주가는 종가 기준 12,010원인 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이 회사의 주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에 기초하여 모집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모집가액을 산정하고,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상장회사의 유상증자에 적용되는 법률상 제한의 대부분이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의(동법 제165조의6 제1항 제1호 등)하고 있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대체로 준용하여 진행합니다. 회사는 주주 분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자 「상법」 제418조 제1항을 준용하여 주주를 배제하지 않는 주주배정 증자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주주의 지분을 희석 등을 방지하여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여 구주주 청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신주인수권증서 양도를 통해 주주의 권익

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로서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8 제1항을 준용하여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삼성증권 주식회사와 잔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 및 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단, 신주인수의 청약 시 초과청약 한도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8 제2항에 따라 100분의 20으로 정해져 있으나,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이하 조항 및 관련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초과청약 한도 설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상 저촉되는 바가 없으므로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시 초과청약 한도를 100분의 100으로 하여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이 0.0989960619인 바, 10,000주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989주(배정 한도 주식수, 1주 미만 절사)를 안분 배정받으며, 초과청약한도 주식수는 배정 한도 주식 1주당 1주를 인정받아 989주까지 초과청약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 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 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 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 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 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 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 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 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계열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을 말한다.

③ 법 제165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의 경우
2. 주권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제176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65조의7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권주(법 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권주를 말한다)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2.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⑤ 법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서 “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 이란 수요예측(발행되는 주식의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와 주식의 보유기간 등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 시 모집가액 산정 방식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따르며, (舊)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모집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3. 모집예정금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상기와 같이 유상증자 방식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하기 내용으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가.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집대상	주수(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고
우리사주배정	-	-	-	-
주주배정	43,140,638주(100%)	11,590원	499,999,994,420원	-
일반모집	-	-	-	-

모집대상	주수(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고
기 타	-	-	-	-
합 계	43,140,638주(100%)	11,590원	499,999,994,420원	-

주1)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서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없습니다.

주2)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전액 일반모집에 배정됩니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고위험고 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3) 금번 유상증자는 판매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공동대표주관회사로 참여함으로써 각사의 잔액 인수방식으로 진행되며, 타사에탁실질주주 청약, 특별계좌(구 명부주주) 청약,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 모두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에도 청약되지 아니한 물량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개별채무로서 자기 책임 하에 본 건 유상증자 잔액인수계약서상 인수비율대로 인수합니다. 단, 어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연대하여 인수하기로 하며,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인수합니다. 이외 인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본 건 유상증자 잔액인수계약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구 분	상 세 내 역
A. 보통주식	435,781,355주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435,781,355주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435,781,355주
F. 유상증자 주식수	43,140,638주
G. 증자비율(F/C)	9.90%
H. 구주주 배정	43,140,638주
I.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H / E)	0.0989960619

주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구주주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0989960619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한도

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한도 주식수(배정한도 주식 1주당 1주; 초과청약 비율 100%)를 합한 주식수로 하고,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i) 구주주 청약한도 = 배정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배정한도 주식수 = 보유주식수 x 신주배정비율(0.0989960619주) (단, 1주 미만 절사)

(iii)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배정한도 주식수 x 초과청약비율(100%)

예를 들어,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이 0.0989960619인 바, 10,000주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989주(배정한도 주식수, 1주 미만 절사)를 안분 배정받으며, 초과청약한도 주식수는 배정한도 주식 1주당 1주를 인정받아 989주까지 초과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0,000주를 보유한 구주주의 청약한도는 배정한도주식수(989주)와 초과청약한도 주식수(989주)를 합한 1,978주입니다.

(2) 모집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주식의 수		43,140,638주																															
주당 모집가액	예정가액	11,590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예정가액	11,59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구주주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1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2) 일반공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청약단위</th> </tr> </thead> <tbody> <tr> <td>10주 이상</td> <td>100주 이하</td> <td>10주 단위</td> </tr> <tr> <td>100주 초과</td> <td>500주 이하</td> <td>50주 단위</td> </tr> <tr> <td>500주 초과</td> <td>1,000주 이하</td> <td>100주 단위</td> </tr> <tr> <td>1,000주 초과</td> <td>5,000주 이하</td> <td>500주 단위</td> </tr> <tr> <td>5,000주 초과</td> <td>10,000주 이하</td> <td>1,000주 단위</td> </tr> <tr> <td>10,000주 초과</td> <td>50,000주 이하</td> <td>5,000주 단위</td> </tr> <tr> <td>50,000주 초과</td> <td>100,000주 이하</td> <td>10,000주 단위</td> </tr> <tr> <td>100,000주 초과</td> <td>500,000 주 이하</td> <td>50,000주 단위</td> </tr> <tr> <td colspan="2">500,000주 초과시</td> <td>100,000주 단위</td> </tr> </tbody> </table>		구 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시		100,000주 단위
		구 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시		100,000주 단위																															
청약기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24년 10월 04일																														
		종료일	2024년 10월 07일																														
	일반모집	개시일	2024년 10월 10일																														
		종료일	2024년 10월 11일																														
청약	주주배정(신주인수권증서)	청약금액의 100%																															
	초과청약	청약금액의 100%																															

항 목		내 용
증거금	일반모집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24년 10월 15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4년 01월 01일 ¹

¹ 단, 회사의 정관 제18조에 따라 지급되는 2024년 상반기 분배는 제외

주1) 모집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주식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3)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모집의 절차

(1) 모집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매 체
신주발행(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	2024년 08월 12일	1)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kif.co.kr)
모집가액 확정 공고	2024년 10월 01일	1)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kif.co.kr)
일반공모 청약공고	2024년 10월 08일	1)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kif.co.kr), 2)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3) 신한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shinhansec.com), 4) NH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nhqv.com), 5) 삼성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samsungpop.com)
배정공고	2024년 10월 15일	1)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2) 신한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shinhansec.com), 3) NH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nhqv.com), 4) 삼성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samsungpop.com)

주) 청약공고 및 배정공고는 공동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합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일자	증지절차	비고
2024년 08월 12일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kif.co.kr)
	증권신고서 제출	-
2024년 08월 23일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일자	증자절차	비고
2024년 08월 26일	1차 발행가액 공시	금융감독원 (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http://kind.krx.co.kr)
2024년 08월 27일	권리락	-
2024년 08월 28일	신주배정기준일	주주확정
2024년 09월 09일	신주배정 통지	-
2024년 09월 19일 ~ 2024년 09월 25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5거래일 이상 거래
2024년 09월 30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24년 10월 01일	확정 발행가액 공고/공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kif.co.kr) 금융감독원 (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http://kind.krx.co.kr)
2024년 10월 04일 ~ 2024년 10월 07일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
2024년 10월 08일	일반공모 청약 공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2024년 10월 10일 ~ 2024년 10월 11일	일반공모 청약	-
2024년 10월 15일	주금납입 / 환불	-
2024년 10월 24일	신주의 유통개시일	-
2024년 10월 24일	신주 상장예정일	-

주1)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서 자본시장법 제206조에 의거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주발행 및 기준일을 공고하였습니다.

주2)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3) 권리락이란 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할 때 신주배정기준일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은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결제일은 매매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후이고, 신주배정기준일은 결제일을 기준일로 하므로, 신주를 배정 받기 위해서는 신

주배정일로부터 2영업일 전(권리락일로부터 1영업일 전)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청약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의 본·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 되었으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 되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 되었으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초과청약 : 제1항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10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초과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일 현재 청약취급사무처에 청약가능한 위탁 계좌 보유 고객에 한하여 청약하실 수 있으며, 일반공모 청약 종료일까지 계좌개설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4)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5) 기타

①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에 따라 청약을 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②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4년 08월 13일부터 2024년 09월 30일까지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

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i) 모집(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결정일까지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한 경우. 이 경우 해당 매수 시점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임.

ii)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iii)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

(3)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0989960619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1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초과청약을 포함한 주주배정 후 실권이 발생한 주식 수와 동일합니다.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5,000주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10,000주
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	50,000주
500,000주 초과	100,000주

(4)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3편 제3장의2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를 준용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1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실권주[구주주배정분-구주주청약분]

$$* \text{초과청약 배정 비율} = \frac{\text{실권주[구주주배정분-구주주청약분]}}{\text{초과청약 주식수}}$$

주)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의 공모에 대해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를 준용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i)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본 건 유상증자 잔액인수계약서상 인수비율에 따라 인수하되, 어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연대하여 인수한다.

(i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잔액인수계약서상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비율]

구분	구분	인수비율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4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3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17%
	삼성증권 주식회사	13%

주)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별로 잔액인수하여야 할 주식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은 잔액인수계약서에 따릅니다.

4) 배정결과의 통지

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4년 10월 15일 청약사무처인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신한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shinhansec.com>), NH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nhqv.com>) 및 삼성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께서는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

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만 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 가. 전문투자자
 - 나. 삭제 <2016. 6. 28.>
 -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1) 교부장소 :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의 본·지점 및 홈페이지와 HTS, MTS(구주주에게는 우편으로 발송예정)

2) 교부방법 :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구주주 청약자	1),2),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공동대표주관회사 본·지점에서 교부 3) 공동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 구주주청약초일인 2024년 10월 04일 전 수취가능 2) 공동대표주관회사 본·지점 : 청약종료일(2024년 10월 07일)까지 3) 공동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24년 10월 07일)까지
일반 청약자	1),2)를 병행 1)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교부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청약종료일(2024년 10월 11일)까지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24년 10월 11일)까지

① 구주주 교부방법

-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를 통해 구주주 청약을 하시는 주주께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 홈페이지 또는 HTS, M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교부 방법

- 원칙적으로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 M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항 각 호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③ 기타사항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상기와 같은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①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청약자(구주주 청약의 경우)

- 청약하시기 위해 청약처를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 및 MTS를 통한 청약시 투자설명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 유선 청약시에는 각 청약처의 녹취기록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청약처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 MTS를 통한 교부(일반청약의 경우)

-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청약취급처, 청약자 유형별 청약방법 요약

[청약사무취급처]

-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3) 일반공모 청약자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청약취급처	청약방법	청약절차	
		구주주 직접청약 또는 특별계좌 보유자(명부주주) 청약	실권주 일반청약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	영업점 내방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00까지)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00까지)
	HTS, MT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00까지)	①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② 투자설명서의 다운로드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상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00까지)
	ARS를 통한 청약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00까지)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00까지)
	유선청약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청약종료일 16:00까지)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청약종료일 16:00까지)

주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서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 방법 및 청약 마감 시간을 사전 확인하여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가 공동대표주관회사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직접 청약) 또는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가 공동대표주관회사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 업무 처리 시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청약종료일 14:00까지 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①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시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대상에게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 의무 등)

① (생략)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

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6)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4년 10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당일(2024년 10월 15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SC제일은행 WBO 센터에 납입합니다.

(7) 주권 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2024년 10월 24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 고유번호
2024년 08월 28일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신한투자증권(주)	00138321
	NH투자증권(주)	00120182
	삼성증권(주)	00104856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을 준용하여 회사는 보통주 주주에게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 주식수 비율대로 보통주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며, 당해 신주인수권은 「상법」 제416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 2024년 08월 12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양도를 허용합니다. 또한, 동 신주인수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됩니다.

1) 금번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이므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약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의 최대 200%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회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4년 09월 19일부터 2024년 09월 25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4년 09월 26일에 상장폐지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5)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회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 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②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 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의 최대 200%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간	2024년 09월 19일부터 2024년 09월 25일까지 (5거래일간) 거래	2024년 09월 09일부터 2024년 09월 27일까지 거래

회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실질주주 소유의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4년 09월 19일부터 2024년 09월 25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4년 09월 26일에 상장폐지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i) 상장거래 : 2024년 09월 19일부터 2024년 09월 25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ii) 계좌대체거래 : 2024년 09월 09일부터 2024년 09월 27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마지막 결제일인 2024년 09월 27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24년 09월 28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 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iii)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③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ii)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의 사항

1)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4년 01월 01일입니다.

단, 2024년 상반기에 지급되는 분배에서는 회사의 정관 제18조에 따라 제외됩니다.

「정관」

제18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회사가 (가) 제 52 조 제 4 항에 따른 초과분배 및/또는 (나) 제 52 조 제 6 항에 따른 중간배당에 따른 각 기준일의 익일 이후 해당 사업년도 내에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해당 기준일의 초과분배, 중간배당 부분은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시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가) 또는 (나)의 경우 신주 발행 이후 추가 초과분배나 결산배당시 기존 주식 1주당 이익분배금과 신주 1주당 이익분배금은 동일하다.

2) 정보이용제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은 잔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잔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인수조건	인수방법
명칭	고유번호	주소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001601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기명식 보통주 43,140,638주	1	잔액인수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	00138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NH투자증권 주식회사	001201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삼성증권 주식회사	0010485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 미청약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이 인수비율에 따라 각각 인수하되, 어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연대책무로 인수합니다.

[잔액인수계약서상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비율]

구분	구분	인수비율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4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3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17%
	삼성증권 주식회사	13%

주)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별로 잔액인수하여야 할 주식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은 잔액인수계약서에 따릅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	인수인	인수수수료	대표주관수수료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3% 중 40% (모집총액의 0.12%)	모집총액의 0.2% 중 40% (모집총액의 0.08%)

구 분	인수인	인수수료	대표주관수수료
공동대표 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3% 중 30% (모집총액의 0.09%)	모집총액의 0.2% 중 30% (모집총액의 0.06%)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3% 중 17% (모집총액의 0.051%)	모집총액의 0.2% 중 17% (모집총액의 0.034%)
	삼성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3% 중 13% (모집총액의 0.039%)	모집총액의 0.2% 중 13% (모집총액의 0.026%)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추가 상장 일정]

날 짜(예정)	내 용
2024년 10월 16일	추가 상장 신청
2024년 10월 24일	신주 상장

- (1) 회사는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 (2) 주주는 상장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3)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거래가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주식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3580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회사 연혁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이전 및 상장 당시의 회사의 연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http://www.mkif.co.kr>)에 게시된 상장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자	내 용
2002년 12월	- 한국도로인프라투자회사 발기설립(2002년 12월 12일)
2005년 11월	- 집합투자업자가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취득-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 투자회사 정관변경: 상장을 위해 (구)증권투자회사법상의 증권투자회사(사모)를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투자회사(공모)로 변경 - 회사명 변경: 한국도로인프라투자회사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2006년 2월	- 금융위에 투자회사의 변경 정관 등록 완료
2006년 3월	- 국내외 공모를 통해 6,000억원 증자 실행 -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부 및 런던증권거래소의 Professional Securities Market에 각 주식 및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동시상장
2006년 4월	- 인천대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코다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후순위 및 선순위 대출채권 매입
2006년 10월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에 대해 800억원의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
2006년 11월	-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대해 후순위대출 약정금 최초 인출 실행
2007년 2월	-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수고속도로(주)에 대한 지분투자 및 후순위대출 약정금 최초 인출실행
2007년 4월	-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평가 AA-(안정적) 등급 획득 - 대구동부순환도로(주)의 기존 선순위 대출약정을 대체하는 대출약정의 실행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주)에 대한 후순위대출 약정금 최초 인출실행
2007년 5월	- 신용대출약정체결(약정기간: 5년, 약정금액: 5,000억원)
2007년 11월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최, 제3회 KRX 상장기업 엑스포 참가
2007년 12월	- 부산항 신항 2-3단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비엔씨티에 대해 664억원의 지분투자 약정 및 1,930억원의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
2008년 1월	- 백양터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백양터널(유)에 제공한 주주 차입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 증권 발행

2008년 3월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전환사채 매각(5년 만기, 6.5% 지분전환, 액면가: 320억원)
2008년 7월	- 마창대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 잔여지분 51% 인수완료
2009년 3월	- 인천대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에 제공하기로 한 선순위대출 약정을 매각
2009년 5월	-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제공한 후순위대출 이자 유동화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체결(제1차 유동화 거래 실행)
2010년 1월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주)에 제공한 후순위 대출금을 매각
2010년 3월	-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 후순위대출 미수이자 제2차 유동화
2010년 11월	- 마창대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의 지분 30%매각
2011년 3월	-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 후순위대출 미수이자 제3차 유동화
2011년 4월	- 기업신용등급 AA-(안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상황 조정
2011년 5월	- 총 권면총액 2,500억원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7년 만기 1,900억원 및 5년 만기 600억원)
2011년 6월	- 신용대출약정 자금재조달 실행(만기 2016년 6월, 약정금액: 2,500억원)
2012년 6월	- 대구광역시 제4차 순환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주)에 제공한 지분투자 및 후순위 대출금 매각
2013년 10월	- 서울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에 투자한 지분투자 및 후순위 대출금 매각
2013년 10월	- 부산항 신항 2-3단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비엔씨티에 500억원의 후순위 대출금 추가 투자 약정
2014년 2월	- 신용대출약정 자금재조달 실행(만기 2019년 2월, 약정금액 : 2,500억원)
2015년 8월	-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시공항하이웨이(주) 자금재조달 실행(신규차입약정 체결 및 자본 환원)
2015년 10월	-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수고속도로(주) 자금재조달 실행 및 지분 추가 투자 (투자 지분 35%에서 43.75%로 증가, 의결권 기준 지분율 58.3%)
2016년 1월	- 우면산터널 사업 재구조화 실행(수입분할관리방식 도입 및 신규차입약정 체결 등)
2016년 3월	- 런던증권거래소의 Professional Securities Market에 상장한 해외주식예탁증서(GDR)의 상장폐지 ¹⁾
2016년 5월	- 단기사채 매입약정 체결 (약정만기: 2018년 5월, 약정금액: 600억원)
2017년 1월	- 마창대교 사업 재구조화 실행(수입분할관리방식 도입 및 신규차입약정 체결)
2017년 8월	- 인천대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 자금재조달 실행 및 지분 추가 투자(지분율 41.02%에서 64.05%로 상승)
2017년 9월	- 국내외 공모를 통해 1,472억원 증자 실행
2018년 6월	- 총 권면총액 2,000억원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5년 만기 1,000억원 및 7년 만기 1,000억원)
2018년 6월	-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자금재조달 실행 및 지분 추가 투자(지분율 15%에서 15.83%로 상승)
2019년 1월	- 신용대출약정 자금재조달 실행(만기: 2024년 1월, 약정금액: 2,500억원)
2019년 4월	- 부산항 신항 2-3단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비엔씨티 자금재조달 실행(신규차입약정 체결 등)
2019년12월	-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업 재구조화 실행(통행료 인하 및 관련 매출 감소에 대한 보전금 정산 구조 도입)
2019년12월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주)에 대해 354억원의 지분투자 약정 및 473억원의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
2020년 9월	-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에 대해 415억원의 지분투자 약정 및 692억원의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 및 투자 실행
2020년 12월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해 2,442억원 증자 실행

2020년 12월	-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사업 재구조화 실행(통행료 인하 및 관련 매출 감소에 대한 보전금 정산 구조 도입)
2021년 6월	- 단기사채 매입약정 체결(약정만기: 2022년 3월, 약정금액: 1,672억원)
2021년 6월	- (주)해양에너지에 투자하기 위해 영산클린에너지(유)에 2,827억원의 투자 약정 체결
2021년 6월	- 서라벌도시가스(주)에 투자하기 위해 보문클린에너지(유)에 761억원의 투자 약정 체결
2021년 8월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해 3,935억원 증자 실행
2021년 8월	- 영산클린에너지(유) 및 보문클린에너지(유)에 총 508억원 추가 투자
2022년 3월	- 단기사채 매입약정 체결(약정만기: 2023년 9월, 약정금액: 2,846억원)
2022년 3월	-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대해 437억원의 지분투자 약정, 787억원의 후순위대출 약정, 57억원 한도의 조건부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 및 투자 실행
2023년 1월	-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36억원 추가 투자 실행
2023년 6월	- 씨엔씨티에너지(주)에 1,832억원의 투자 약정 체결
2023년 6월	- 총 발행액 1,000억원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5년 만기 1,000억원)
2023년 7월	- 씨엔씨티에너지(주)에 1,832억원 투자 실행
2023년 8월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해 3,610억원 증자 실행
2023년 9월	- 단기사채 매입약정 체결(약정만기: 2025년 9월, 약정금액: 3,922억원)
2023년 11월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1,000억원의 지분투자 약정, 948억원의 후순위대출 약정, 200억원 한도의 조건부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
2024년 1월	- 신용대출약정 자금재조달 실행(만기: 2029년 1월, 약정금액: 2,500억원)
2024년 7월	- 하남 데이터센터 매입을 위해 그린디지털인프라(주)에 230억원의 지분투자 약정 및 4,000억원의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

¹ 회사는 2006년 3월 상장 당시 해외투자자가 용이하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하여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나, 과거에 발행되었던 대부분의 GDR이 원주로 전환되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됨에 따라 GDR 상장에 따른 효용성 대비 유지비용을 고려하여 2016년 3월 24일자로 상장폐지 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회사의 존립기간 :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아래 경우에 따른 해산일까지입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나. 피흡수합병
- 다. 파산
- 라.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마.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위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존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의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맥쿼리자산운용(주)
주요 주주	Macquarie Infrastructure and Real Assets (Europe) Limited (맥쿼리자산운용(주)의 보통주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주요 주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A동 18층(공평동, 센트로폴리스) (우:03161) 전화: 02-3705-8565
회사연혁	1) 2002년 10월 17일 "맥쿼리인프라스트럭처전문운용(주)"설립 2) 2002년 12월 13일 한국도로인프라투자회사와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 3) 2002년 12월 23일 회사명을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운용(주)"로 변경 4) 2005년 11월 11일 회사명을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주)"로 변경 및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취득 5)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자산집합 투자업(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 운용업무에 한함) 인가 취득 6) 2010년 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 업 인가 변경(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 운용업무에 한한다는 인가조건 취소) 7) 2012년 2월 맥쿼리그룹이 신한금융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던 맥쿼리신한인프라 스트럭처자산운용(주)의 보통주 50%를 매입하여 의결권을 기준으로 100% 주주 지위 확보 및 회사명을 "맥쿼리자산운용(주)"로 변경 8) 2013년 1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 업 인가 추가 취득 9) 2015년 10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투자 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현재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10) 2020년 3월 2일 계열회사이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현재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인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 용(유)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현재 현재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추가

주1) 2024년 6월 30일 기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맥쿼리자산운용(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산집합투자업(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의 운용업무에 국한하지 아니함) 인가를 받았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을 2인 이상 상근 임직원으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회사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명단입니다.

[운용전문인력 및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정재우	1981	전무	1개	53,863억원	-	-	4.18%	4.33%	13년 10개월
박진욱	1964	전무	1개	53,863억원	-	-			11년 6개월

주1)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및 운용규모는 2024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누적)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회사 성과 포함)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정재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쿼리자산운용(주) 인프라운용팀 전무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운용(포트폴리오관리/자본운용) 담당 - 2012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국민간운영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담당 - 2010년~현재, 맥쿼리자산운용(주)에서 근무 중 - 2009년~2010년, 한국증권금융(자금조달 및 주식운용 담당)에서 근무 - 2008년~2009년, 한국산업은행(기업여신 담당)에서 근무
박진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쿼리자산운용(주) 인프라운용팀 전무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운용(포트폴리오관리/자본운용) 담당 - 2005년~2012년, 맥쿼리자산운용(주) 준법감시인 - 2005년~현재, 맥쿼리자산운용(주)에서 근무 중 - 1989년~2005년, 대한투자신탁(현 하나증권(주))에서 근무

나. 투자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년 10월 ~ 현재	정재우, 박진욱
2019년 2월 ~ 2019년 9월	박윤식(~2019년 3월), 정재우, 서범식
2016년 3월 ~ 2019년 2월	박윤식, 정재우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회사, 특별자산, 폐쇄형(환매금지형), 추가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및 동법 제9조 제18항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며, 민간투자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입니다.

회사는 2002년 12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 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보유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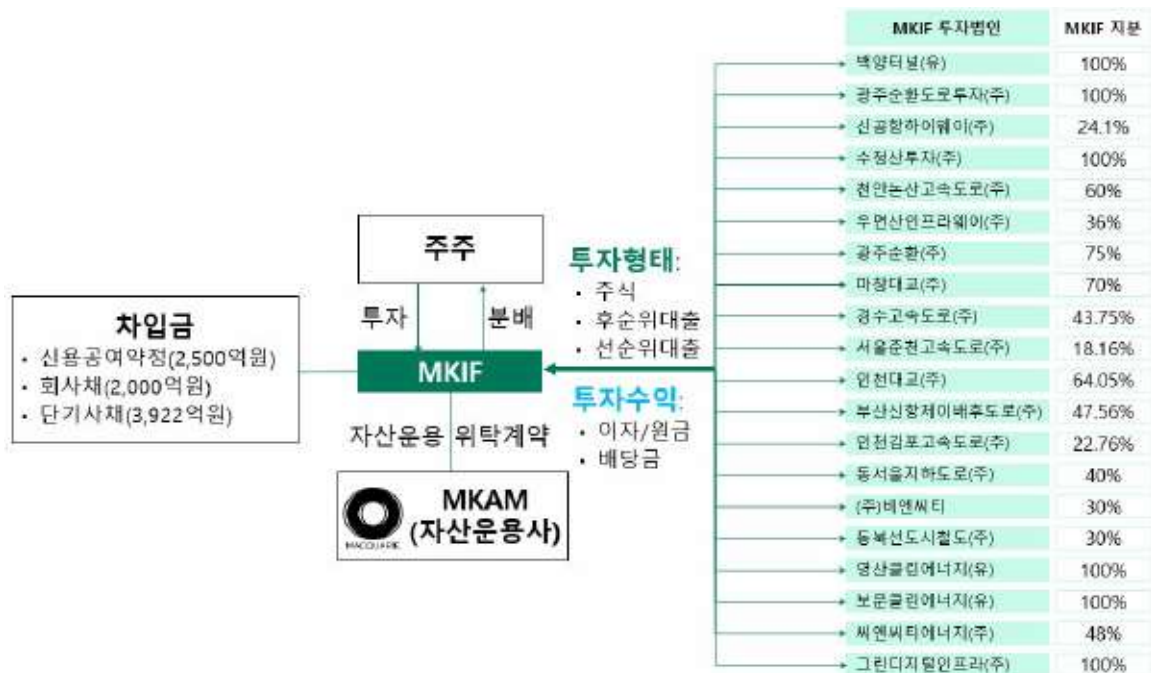
회사가 2006년 3월 15일 상장된 이래 회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회사의 주식(종목) 코드는 088980입니다.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 외에 별도의 종류(Class)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국내 증권사에서 유가증권

매매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로 인하여 증권사가 부과하는 매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도입된 전자증권제도의 적용을 받아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증권을 등록·발행하여야 하고,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증권에 관한 모든 사무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회사는 2019년 7월 18일 회사 정관을 전자증권법의 규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개정하였고, 동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회사의 주주들에게 전자증권제도의 도입과 그로 인한 영향을 통지하였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회사 투자구조_2

주) 2024년 6월 30일 회사의 투자금액 기준(그린디지털인프라(주) 포함; 2024년 7월 30일에 그린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매입 예정한 하남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약정금 전액이 투자됨을 전제하였고, 실제 투자 집행은 2024년 8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



투자 포트폴리오

주) 2024년 6월 30일 기준(그린디지털인프라(주) 포함; 2024년 7월 30일에 그린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매입 약정한 하남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약정금 전액이 투자됨을 전제하였고, 실제 투자 집행은 2024년 8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한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입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인프라펀드")의 경우 그 수익이 안정적인 것으로 기대하나 회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회사의 투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사업시행법인")의 주식, 지분, 채권 및 대출채권 등입니다(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43조 제1항). 회사는 투자를 통해 배당수익 및 이자수익 등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회사의 투자자에게 분배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외교정보통신망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한편, 현재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여유자금 운용 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하 "투자자산") 중 일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로 이

루어져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의미합니다(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

따라서 회사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도시가스, 디지털(데이터센터) 등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주식, 지분, 채권,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동 사업시행자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 지분, 채권, 동 사업시행자에 투자한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일반 사회기반시설사업 사업시행법인의 주식, 지분, 채권 및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 내의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총 3조 1,089억원을 20개의 국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걸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14개의 유료도로 사업(교량 및 터널 포함), 1개의 항만 사업, 1개의 도시철도 사업, 3개의 도시가스 사업 및 1개의 디지털(데이터센터)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규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회사가 투자한 사업 내역을 요약한 표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개요 및 투자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mkif.co.kr>)에서 제공하는 투자사업별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투자사업 내역(주1)]

투자시설명	현황	투자 형태 (10억원)				지분율(%)
		주식	후순위	선순위	합계	
백양터널	운영중	1.2	-	1.0	2.2	100%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중	33.1	85.2	10.0	128.3	100%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운영중	23.6	51.7	-	75.3	24.1%
수정산터널	운영중	47.1	-	-	47.1	100%
천안-논산 고속도로	운영중	87.8	182.3	-	270.1	60%
우면산터널	운영중	5.3	-	15.0	20.3	36%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	운영중	28.9	-	-	28.9	75%

투자시설명	현황	투자 형태 (10억원)				지분율(%)
		주식	후순위	선순위	합계	
마창대교	운영중	33.8	79.0	-	112.8	70%
용인-서울 고속도로	운영중	51.5	99.6	-	151.1	43.75%
서울-춘천 고속도로	운영중	4.2	161.8	-	166.0	18.16%
인천대교	운영중	54.4	241.0	-	295.4	64.05%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운영중	41.5	69.2	-	110.7	47.56%
인천-김포 고속도로	운영중	43.7	84.3	-	128.0	22.8%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건설중	100.0	114.8	-	214.8	40%
부산항신항 2-3단계	운영중	66.4	193.0	-	259.4	30%
동북선도시철도	건설중	35.4	47.3	-	82.7	30%
(주)해양에너지	운영중	32.3	290.2	-	322.5	100%
서라벌도시가스(주)	운영중	8.7	78.4	-	87.1	100%
씨엔씨에너지(주)	운영중	183.2	-	-	183.2	48%
그린디지털인프라(주)	운영중	23.0	400.0	-	423.0	100%
합계	-	905.1	2,177.8	26.0	3,108.9	-
비율 (%)	-	29.1%	70.1%	0.8%	100%	-

주1) 2024년 6월 30일 회사의 투자금액 기준(그린디지털인프라(주) 포함; 2024년 7월 30일에 그린 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매입 약정한 하남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약정금 전액이 투자됨을 전제하였고, 실제 투자 집행은 2024년 8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

주2)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후순위 대출금은 운전자금 32억원 및 중순위 주주차입금 500억원을 포함한 금액임

주3)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 투자내역은 회사가 각각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영산클린에너지(유)와 보문클린에너지(유)에 대한 회사의 투자내역임

나. 유상증자 관련 신규 투자대상 및 자금 사용의 목적

회사는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사업(도로, 철도, 항만, 도시가스, 에너지, 디지털(데이터센터) 등, 자세한 내용은 가. 투자대상 참조)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투자금 및 그 외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대비하여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차입 한도(회사 자본금의 30%)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하는 적정 수준의 재무적 유동성(현금, 인출가능 신용대출금, 잔여 차입한도)을 항상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우선 회사의 현금 및 차입금을 활용하여 투자금 및

운영자금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후 필요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여 미래 잠정 신규 투자를 비롯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재무적 유동성을 재확보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30일 기준, 회사의 차입 한도는 8,422억원(자본금 2조 8,074억원의 30%에서 억원 미만 절사)이며, 이 중 회사는 4,100억원을 차입하여 투자 및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5,000억원의 자금 모집을 목표하며, 이에 따른 발행제비용은 34억원으로 예상합니다. 목표한 규모의 자금 모집이 이루어질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기존 2조 8,074억원에서 4,966억원(목표 모집액 5,000억원에서 예상 발행제비용 34억원을 제한 금액) 증액되어 3조 3,04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해당 자본금 증액에 따라 회사의 차입 한도는 1,489억원(자본금 증액분 4,966억원의 30%에서 억원 미만 절사) 증액되므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목표한 규모의 자금 모집이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의 유동성은 총 6,455억원(자본금 증액분 4,966억원 및 차입한도 증액분 1,489억원)만큼 늘어납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늘어나는 유동성 6,455억원 중 2,148억원은 회사가 2023년 11월 22일에 발표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투자에 활용하고, 4,230억원은 회사가 2024년 7월 30일에 발표한 하남 데이터센터 매입 관련으로 회사가 설립한 법인인 그린디지털인프라(주) 투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잔여 유동성 77억원은 미래 잠정 신규 투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사용 계획]

자금 사용 목적	사용예정 금액	예상 자금집행 시기 ¹	비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투자	2,148억원 (투자약정금)	해당 사업 건설기간 (1,503억원) 운영 시작 후 (645억원)	1,503억원은 해당 사업 건설기간 (2024년부터 60개월 예상) 동안 순차적으로 투자하고, 잔여 645억원은 운영 시작 후 투자 예정
하남 데이터센터 매입 (회사가 설립한 법인인 그린디지털인프라(주) 투자를 통해 매입)	4,230억원 ² (투자약정금)	2024년 8월 (2,730억원) 2024년 4분기 (1,300억원)	회사는 먼저 회사의 차입금을 인출하여 2024년 8월 내에 2,730억원을 투자하고, 금번 유상증자로 늘어나는 유동성을 활용하여 (i) 2024년 4분기 중 기 인출한 회사 차입금 2,730억원을 상환하고

자금 사용 목적	사용예정 금액	예상 자금집행 시기 ¹	비고
		2025년 상반기 (200억원)	, (ii) 2024년 4분기 중 1,300억원을 투자하고, (iii) 2025년 상반기 중 200억원을 투자 예정
미래 잠정 신규 투자에 활용	77억원	-	잔여 유동성 77억원은 미래 잠정 신규 투자에 활용할 계획
계	6,455억원 ³	-	-

¹ 실재는 예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² 자세한 내용은 아래 "(2) 하남 데이터센터 매입" 부문에 기재된 내용 참고

³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을 목표하는 자금 5,000억원에서 예상 발행제비용 34억원을 차감한 4,966억원(회사 자본금 증액분)에 차입 한도 증액분 1,489억원(4,966억원의 30%에서 억원 미만 절사)을 합산한 금액

(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회사는 2023년 11월 22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총 2,148억원 규모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는 본건 투자를 위해 본 사업의 시행자인 동서울지하도로(주)의 타 출자자들과 주주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시행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타 출자자 중 비채무 출자자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수익형(BTO, Build-Transfer-Operate)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대상 도로를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사업을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민간투자비 회수와 일정 이익을 기대하는 구조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업시행자	동서울지하도로(주)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사업종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대상자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구간
위치	성북구 석관동~강남구 삼성동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1단계에 해당하는 성북구 석관동부터 강남구 대치동까지 총 12.2km 구간 중 일부)
총 연장	10.1km(왕복 4차로)
주요 시설물	지하차도 - 진출입 IC: 4개소
건설기간	2024년부터 60개월 예상 ¹
실시협약기간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028년 12월 ~ 2058년 11월 예상 ¹)
통행료	2,500원/대 ²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개요_1

자산 위치³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위치

- 주1) 예상이며, 실제로는 건설기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2) 2015년 불변가 기준이며, 소형차 / 전구간 기준임
- 주3)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구간의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한 지도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장지동과 의정부시 상촌IC를 잇는 기존 동부간선도로 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강남권과 직접 연결하여 교통 수요를 증진시키고, 지상 주요 도로구간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단계에 걸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성북구 석관동부터 강남구 대치동까지 총 12.2km,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가 2028년까지 건설될 계획이며, 이 중 성북구 석관동부터 강남구 삼성동까지 총 10.1km 구간이 회사가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 구간(주1)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소형차 전용으로 운영되고 IC가 선별적으로 설치되어, 서울 동북권과 동남권 간 효율적인 장거리 교통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 완료 후 2단계는 2029년부터 2034년 동안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며, 노원구 월계동부터 성동구 송정동까지 총 11.5km 구간을 지하로 건설하여 단거리 지역을 연결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내 중랑천 인근 구간을 점진적으로 폐쇄한 뒤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완료되면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거리(민간투자사업 구간)와 단거리(2단계 구간) 교통이 효율적으로 분리되어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나아가 주변 간선도로와의 연결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 동북권의 중추적인 교통로로 자리매김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주2)됩니다.

- (주1) 강남구 삼성부터 대치까지 총 2.1km 구간은 재정사업 구간
- (주2) 2023년 3월 27일자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참고

회사는 건설기간(2024년부터 60개월 예상; 실제로는 예상과 다를 수 있음) 동안 사업시행자의 지분 27.6%(355억원), 후순위대출의 40%(948억원), 조건부 후순위대출의 40%(200억원 한도)에 투자하고, 운영 시작 후 64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시행자의 지분 12.4%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본건 투자가 종결되면 회사는 사업시행자의 지분 40%(1,000억원), 후순위대출의 40%(948억원) 및 조건부 후순위대출의 40%(200억원 한도)를 보유하게 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투자 구조 및 주요 금융조건]

투자 구조¹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투자 구조

주요 금융조건

대출 Tranche	금액	금융조건
선순위 대출 Tranche A	2,100억원	• 연 금리: 4.9% • 대출기간: 22.25년
선순위 대출 Tranche B	940억원	• 연 금리: 91CD ¹ + 1.5% • 대출기간: 22.25년
선순위 대출 Tranche C	3,960억원	• 연 금리: 91CD ¹ + 1.7% • 대출기간: 22.25년
선순위 대출금 소계	7,000억원	
조건부 신용공여 대출 ³	500억원 한도	• 연 금리: 91일CD ¹ + 3%
후순위 대출	2,370억원	• 연 금리: 건설기간 10% / 운영기간 12% • 대출기간: 34.25년
조건부 후후순위 대출 ²	500억원 한도	• 후순위 대출과 조건 동일
대출금 총계	9,370억원(선/후순위) 및 1,000억원 한도(조건부 신용공여/후후순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주요 금융조건

- 주1) 약정금액 전액이 투자된 후 기준; 회사는 건설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의 지분 27.6%(355억원), 후순위대출의 40%(948억원), 조건부 후후순위대출의 40%(200억원 한도)에 투자하고, 운영 시작 후 64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시행자의 지분 12.4%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임
- 주2) 재무 출자자들의 현금수익률이 연 6.5%미만일 때 투입되는 조건부 한도 대출
- 주3) 선순위 대출 원리금 상환 자원이 부족할 때 투입되는 조건부 한도 대출

주4) 2024년 7월 31일 기준 3.5%

(2) 하남 데이터센터 매입

회사는 2024년 7월 30일 회사가 설립한 법인인 그린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매도인(주1)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건물, 토지 및 본 자산에 소재하는 매도인 소유의 각종 설비, 동산, 구축물 등(이하 총칭하여 "본건 데이터센터")을 100% 취득하기로 결정(주2)하였고, 이에 그린디지털인프라(주)는 매도인과 본건 데이터센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340억원(주3)이며, 잔여 구축공사비용(주4) 및 각종 부대비용(주5)을 포함하여 본건 투자와 관련된 투자비는 총 9,180억원(주6)으로, 이는 회사가 그린디지털인프라(주)에 투자하는 자금 4,230억원(자본금 230억원 및 후순위대출 4,000억원) 및 그린디지털인프라(주)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선순위대출 4,950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 회사가 투자 약정한 자금 4,230억원 중 1,300억원은 우선 외부 대주단이 그린디지털인프라(주)에 제공하는 브릿지론으로 조달하고, 금번 유상증자로 회사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회사는 그린디지털인프라(주)에 1,300억원을 투자하여 브릿지론 1,300억원을 상환하고 이를 후순위대출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전용 건물에 전기, 통신, 냉방 등의 기반 설비와 서버, 저장장치 등 IT 설비를 갖춘 디지털 인프라 시설이며, 이 중 코로케이션(임대용) 데이터센터는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건물 내 공간을 임대하여 임대료와 전력비 등 정해진 요금을 지급받고, 임차인(실제 이용자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 이용자)은 해당 공간에 서버랙, 서버, 저장장치 등을 자체 비용으로 설치, 유지보수, 관리하며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온라인 거래 확산, 디지털 콘텐츠 소비 증가 등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주요 기업들이 밀집된 수도권은 두터운 수요 및 안정적인 통신망을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전력 계통/수급 부담이 큰 수도권 내 신규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을 강화(주7)하기로 하였고, 향후 수도권 신규 공급이 제한될 경우 본건 데이터센터와 같이 기 설립된 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본건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위치한 총 수전용량 40MW, 목표 IT 부하(IT Load) 25.

44MW 규모(주8)의 하이퍼스케일급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입니다. 총 12개층(지하 2층 - 지상 10층), 연면적 41,919m² 의 건물 내에는 예비 전원/냉각 장치 등 Tier 3 등급에 준하는 이중화 설비가 구비되어 운영 중단 없이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이 가능하며, 최신 보안/소방 시스템도 구축되어 각종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예방, 대처가 가능합니다.

본건 데이터센터의 임차인은 (주)엘지씨엔에스입니다. 임차인은 매도인과 본건 데이터센터 전체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데이터센터 이용자와 해당 데이터센터 부분에 상응하는 데이터센터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총 약정 사용량은 목표 IT 부하의 99% 수준이며, 구축공사 진척에 따라 램프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1)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54호의 신탁업자

(주2)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가 가능하고, 데이터센터는 집적정보통신시설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현행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13(사회기반시설 유형) 중 제16호에 해당되므로, 본건 투자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에 해당함

(주3) 매매계약서상 기초 매매대금은 7,340억원이고, 거래 종결일까지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 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건 투자비와 관련된 총 투자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함

(주4) 건물 신축공사는 2023년 11월에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건축/소방/전기/통신 공사는 2025년 6월 완료 목표

(주5) 세금, 금융주선, 보험, 법률자문 관련 비용 등

(주6) 예상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에 근거한 추정금액으로, 매매대금 정산 및 부대비용 증가에 대비하여 브릿지론 인출 한도는 1,300억원까지로 설정하였음; 부가가치세 환급 직후 상환하는 단기대출 450억원 및 운영 중 추가 차입이 필요할 경우 인출 가능한 200억원 한도의 신용 대출은 비포함

(주7) 2023년 3월 9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방안 완화)

(주8) 잔여 구축공사 완료 후 기준

[하남 데이터센터 개요]

자산 개요

대상 자산	데이터센터 건물, 토지 및 본 자산 내 소유주 소유의 각종 설비, 동산, 구축물(이하 "본건 데이터센터")
위치	대한민국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사업지면적	6,637 m ²
건물 연면적	41,919 m ²
건물 준공일(사용승인일)	2023년 11월 28일
건물 규모	총 12층(지하 2층 - 지상 10층)
데이터센터 구분	하이퍼스케일 / Tier 3
전력 용량 ¹	총 수전용량 40MW / 목표 IT 부하(IT Load) 25.44MW
서버랙 수 ¹	2,800개
예비 장치	전원 공급 장치, 변압기, 발전기, 냉각시설
임차인 ²	(주)엘지씨엔에스
데이터센터 이용자 ²	국내 IT 기업, 대기업, 금융사 등

하남 데이터센터 개요

자산 위치



하남 데이터센터 위치

주1) 잔여 구축공사 완료 후 기준(건물 신축공사는 2023년 11월에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건축/소방/전기/통신 공사는 2025년 6월 완료 목표임)

주2) 현재(2024년 7월) 본건 데이터센터 임대차계약기준

[하남 데이터센터 사업구조]



하남 데이터센터 사업구조

주1) 현재(2024년 7월) 본건 데이터센터 임대차계약 기준

주2) 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kW당 임대료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또는 합의된 수준에 따라 매년 인상

주3) 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kWh당 전력요금으로, 실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전력비용이 전 가되는 수준으로 예상되며, 한국전력공사 요금 조정과 연동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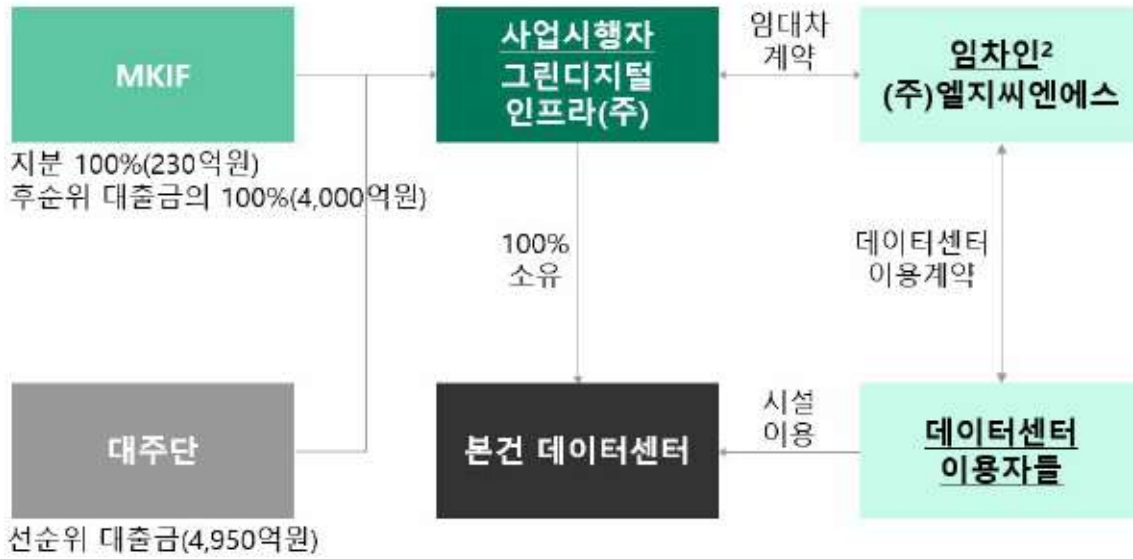
회사가 그린디지털인프라(주)에 투자하는 자금 총 4,230억원 중, 2,730억원은 2024년 8월 중 회사가 단기사채 발행 및 신용대출 인출을 통해 마련(주1)될 예정이며, 그린디지털인프라(주)는 본건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계약의 지위, 권리, 의무를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늘어나는 유동성을 활용하여 (i) 2024년 4분기 중 기 인출한 회사 차입금 2,730억원을 상환하고, (ii) 2024년 4분기 중 그린디지털인프라(주)에 1,300억원을 투자하여 그린디지털인프라(주)의 브릿지론 1,300억원을 상환하고 이를 후순위대출로 대체하며, (iii) 2025년 상반기 중 잔여 투자약정금 200억원을 그린디지털인프라(주)에 투자하여 본건 데이터센터 투자를 종결시킬 계획입니다.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후, 그린디지털인프라(주)에 대한 회사의 투자 금액은 총 4,230억원 (자본금 230억원 및 후순위대출 4,000억원)이 될 예정입니다.

(주1) 2024년 6월 30일 기준 회사는 약 4,500억원의 유동성을 보유중임

[하남 데이터센터 투자 구조 및 주요 금융조건 (투자약정금 전액 투자 후)]

투자 구조¹



하남 데이터센터 투자 구조

주요 금융조건¹

대출 Tranche	금액	금융조건
선순위 대출 Tranche A	4,000억원	• 연 금리: 4.95% • 대출기간: 4년
선순위 대출 Tranche B	950억원	• 연 금리: AAA 무보증 금융채 1년물 ³ + 1.25% • 대출기간: 4년
선순위 대출금 소계	4,950억원	
후순위 대출	4,000억원	• 연 금리: 8.5% • 대출기간: 4년
대출금 총계	8,950억원(선/후순위)	

하남 데이터센터 주요 금융조건

주1) 회사가 그린디지털인프라(주)의 브릿지론 1,300억원을 상환하고 이를 후순위대출로 대체하여 추가 투자를 완료한 후 기준; 부가가치세 환급 직후 상환하는 단기대출 450억원 및 운영 중 추가 차입이 필요할 경우 인출 가능한 200억원 한도의 신용 대출은 비포함

주2) 현재(2024년 7월) 본건 데이터센터 임대차계약 기준

주3) 2024년 7월 31일 기준 3.303%

(3) 회사 영향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투자 및 하남 데이터센터 매입으로 회사는 추가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신규 자산 확보,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 가중평균 만기 연장 등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사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¹]

(단위: 십억원)

투자 분야(투자자산 수)	투자 전 투자금액 (비중)	투자 후 투자금액 (비중)
유료도로(13 → 14)	15,362억원 (62%)	17,510억원 (56%)
항만(1)	2,594억원 (11%)	2,594억원 (8%)
도시철도(1)	827억원 (3%)	827억원 (3%)
도시가스 & 에너지(3)	5,928억원 (24%)	5,928억원 (19%)
디지털(0 → 1)	-	4,230억원 (14%)
합계(18 → 20)	24,711 (100%)	31,089 (100%)

주1) 2024년 6월 30일 회사 투자금액 기준(그린디지털인프라(주) 포함; 2024년 7월 30일에 그린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매입 약정한 하남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약정금 전액이 투자됨을 전제하였고, 실제 투자 집행은 2024년 8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

다. 투자제한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3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허용되어 있으며, 회사의 정관 제43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 2. 국채·공채의 매입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한편, 민간투자법 제44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81조의 "자산운용의 제한" 규정은 회사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미적용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집합투자자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나.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바.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

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사.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2. 집합투자자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
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3. 집합투자자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
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
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
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
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
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
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
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
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 같은 항 같은 호 바목의 위험평가액 및 같은 항 같은 호 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부터 6개월(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회사의 주요 투자전략은 민간투자법상의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증대하고 현금을 배당함으로써 주주에게 수익을 창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다음을 통해 위의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래성 있는 인프라 사업을 발굴합니다.

2) 회사의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합니다.

3) 레버리지 증대 또는 자금 재조달을 통해 회사의 금융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합니다.

4) 특정 인프라 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투자 위험에 상응하는 기대수익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합니다.

5) 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전략적, 상업적, 재무적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집중 투자합니다.

회사는 현재 투자 중인 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도시가스, 디지털(데이터센터) 인프라 사업 외에도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 관리

회사는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개별 자산의 편입과 매각, 리파이낸싱과 관련하여 회사는 투자전략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업실사와 재무평가를 실행합니다. 회사는 중대한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분석 상의 주요 가정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법률, 재무, 세무, 회계, 규제, 교통, 보험, 환경, 기술 및 운영 측면과 같은 주요 위험분야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는 인프라 사업 분야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회사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유동성 제공을 위해 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시켰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식에 대한 유동성 및 환금성은 타 비상장 회사의 주식 대비 원활한 편이나,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금성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나. 수익구조

회사는 투자회사로서 회사의 영업성과는 투자하는 사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거래에 따른 차익 및 수수료 수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의 주된 비용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용보수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수 및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입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문서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5에 따라 자본금의 30%까지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의 투자수익률을 극대화 하고자 회사의 투자, 분배 및 운영을 목적으로 위 차입 한도 내에서 차입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회사는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중개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 및 회사의 주식의 유동성에 대한 위험요인은 나. 회사위험 - (1) 분배금 지급 관련 위험, (2) 투자자금 조달 불확실성 위험, (3) 차입금 관련 위험에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회사에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회사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사업위험

(1) 투자법인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 채무상환 및 이익배당 능력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에게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4년 6월 30일 기준 회사가 투자법인에게 실행한 투자자산 및 미수이자의 장부가액은 총 3.4조원으로, 선순위대출, 후순위대출, 지분증권, 미수이자는 각각 0.8%, 49.4%, 23.0%, 26.8%(총 투자자산 및 미수이자의 장부가액 대비 비중)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환순위가 열위한 후순위대출 및 지분증권이 회사의 총 투자자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회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운영기간 내에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법인들은 회사를 포함한 대주단에게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각 투자법인이 채무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투자법인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법인이 관련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수리 또는 관리를 위해 소요하는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이 당초 추정치보다 클 수 있으며, 이런 추가적인 비용은 투자법인의 현금흐름 및 회사의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법인들은 채무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후순위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나 주주배당 이전에 기한이 도래한 선순위 채무에 대해 이자 및 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투자법인들은 필요 시 부채상환적립계좌를 적립하며, 후순위 원리금 지급 또는 주주배당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투자법인들은 변동금리로 조달한 선순위 채무에 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회사가 지급받을 이자 및 원금 혹은 배당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법인의 현금흐름이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영향을 받아 악화되거나, 기타 차입계약조건을 불이행하게 될 경우 투자법인은 채무 전체 혹은 일부를 재조달하거나 추가적인 조달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금재조달이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그 투자법인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된 채권자들이 투자법인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이러한 투자법인에 대한 회사의 투자자산 가치가 하락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 채무상환 및 이익배당 능력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에게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회사가 투자한 사업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투자한 사업 현황]

(기준일 : 2024년 6월 30일) ¹

(단위 : 년)

구분	투자시설 및 사업명	사업시행기간	잔존 사업시행기간
민간투자사업	백양터널	25.0	0.5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28.0	4.5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30.0	6.5
	수정산터널	25.0	2.8
	천안-논산 고속도로	30.0	8.5
	우면산터널	30.0	9.5
	광주제2순환도로, 3-1구간	30.0	10.4
	마창대교	30.0	14.0
	용인-서울 고속도로	30.0	15.0
	서울-춘천 고속도로	30.0	15.1
	인천대교	30.0	15.3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30.0	22.6
	인천-김포 고속도로	30.0	22.7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30.0	30.0 ²
	부산항 신항 2-3단계	28.3	15.8
	동북선 도시철도	30.0	30.0 ²
	가중평균²	29.6	15.9
	(주)해양에너지		

구분	투자시설 및 사업명	사업시행기간	잔존 사업시행기간
일반 사회기반시설사업 (비민간투자사업)	서라벌도시가스(주)	해당없음(영속사업)	
	씨엔씨티에너지(주)		
	하남 데이터센터		

¹ 2024년 6월 30일 기준 및 그린디지털인프라(주) 포함; 2024년 7월 30일에 그린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매입 약정한 하남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약정금 전액이 투자됨을 전제하였고, 실제 투자 집행은 2024년 8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

² 현재 건설 중이며, 사업시행기간은 각 준공일로부터 30년이므로 30년 기재

³ 회사 투자금액 및 인천김포고속도로(주) 및 동서울지하도로(주) 투자약정금액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한편, 2017년 중에는 회사는 인천대교(주)에 대한 지분을 기존 41.02%에서 64.05%로 확대하고, 후순위대출 규모를 기존 894억원에서 2,41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중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주)의 지분을 기존 15%에서 15.83%로 확대하고, 신규 후순위대출 총 3,195억원 중 743억원에 투자하였습니다.

2019년 중에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주)에 총 827억원을 투자 약정하였고, 이는 동북선도시철도(주) 자본금의 30%에 해당하는 354억원과 후순위 대출금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473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정금은 착공시기인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인출되기 시작하여 2023년 11월까지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2020년 중에는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에 총 1,107억원을 투자 약정하였고, 이는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자본금의 47.56%에 해당하는 415억원과 후순위 대출금 총액의 81%에 해당하는 692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정금은 2020년 9월에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2021년 중에는 투자목적회사(SPC)인 영산클린에너지(유)와 보문클린에너지(유)를 통해 각 (주)해양에너지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2021년 7월 12일에 영산클린에너지(유)와 보문클린에너지(유)에 총 3,588억원을 투자하여 두 SPC의 자본금(지분증권 투자) 및 주주대여금(후순위대출 투자금) 총액

의 100%를 취득하며 실질적으로 (주)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주)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17에는 두 SPC에 총 508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총 투자금액을 4,096억원(영산클린에너지(유) 자본금 323억원 및 주주대여금 2,902억원, 보문클린에너지(유) 자본금 87억원 및 주주대여금 784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중에는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대해 자본금과 후순위 대출금 및 후후순위 대출금 총액의 22.8%를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체 약정금 중 1,006억원은 2022년 3월 16일에 인출되어 자본금의 8.9% 매입(219억원) 및 후순위대출 총액의 22.8% 투자(787억원)에 사용되었고, 2022년 12월 27일에는 자본금의 13.9%를 추가 취득(219억원) 했습니다. 조건부 후후순위대출 약정금은 총 56억원 중 54억원이 인출되어 2024년 6월 30일 기준 2억원이 잔여 약정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 중에는 총 세 건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첫째로, 회사는 2023년 1월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총 36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지분을 15.83%에서 18.16%로 확대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회사는 2023년 6월에 씨엔씨티에너지(주)의 기존 주주들 중 일부로부터 씨엔씨티에너지(주)의 주식 총 957,437주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씨엔씨티에너지(주)와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씨엔씨티에너지(주)가 발행하는 신주 1,250,000주를 전량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5일, 회사는 총 1,832억원을 투자하여 회사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씨엔씨티에너지(주)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였고, 이로써 회사는 씨엔씨티에너지(주)의 48% 주주가 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회사는 2023년 11월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총 2,148억원 규모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본 사업의 시행자인 동서울지하도로(주)의 타 출자자들과 주주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시행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타 출자자들 중 비재무 출자자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는 건설기간(2024년부터 60개월 예상; 실제로는 예상과 다를 수 있음) 동안 사업시행자의 지분 27.6%(355억원), 후순위대출의 40%(948억원), 조건부 후후순위대출의 40%(200억원 한도)에 투자하고, 운영 시작 후 64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자의 지분 12.4%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약정된 모든 투자가 종결되면 회사는 사업시행자의 지분 40%(약 1,000억원), 후순위대출의 40%(948억원) 및 조건부 후순위대출의 40%(200억원 한도)를 보유하게 됩니다.

2024년 중에는 회사가 설립한 법인인 그린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매도인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건물, 토지 및 본 자산에 소재하는 매도인 소유의 각종 설비, 동산, 구축물 등을 100% 취득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그린디지털인프라(주)는 2024년 7월 매도인과 자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340억원이며, 잔여 구축공사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본건 투자와 관련된 투자비는 총 9,180억원으로, 이는 회사가 그린디지털인프라(주)에 투자하는 자금 4,230억원(자본금 230억원 및 후순위대출 4,000억원) 및 그린디지털인프라(주)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선순위대출 4,950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 회사가 투자 약정한 자금 4,230억원 중 1,300억원은 우선 외부 대주단이 그린디지털인프라(주)에 제공하는 브릿지론으로 조달하고, 금번 유상증자로 회사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회사는 그린디지털인프라(주)에 1,300억원을 투자하여 브릿지론 1,300억원을 상환하고 이를 후순위대출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30일 현재 회사가 투자법인에게 실행한 투자자산 및 미수이자의 장부가액은 총 3.4조원이며, 선순위대출, 후순위대출, 지분증권, 미수이자는 각각 0.8%, 49.4%, 23.0%, 26.8%(총 투자자산 및 미수이자의 장부가액 대비 비중)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투자자산 구성]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6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금액	비중 ¹⁾	금액	비중 ¹⁾	금액	비중 ¹⁾	금액	비중 ¹⁾
선순위대출	260	0.8%	426	1.3%	614	2.0%	775	2.8%
후순위대출	16,628	49.4%	16,610	50.2%	16,459	54.6%	15,512	56.2%
지분증권	7,723	23.0%	7,723	23.3%	5,710	19.0%	5,118	18.5%
미수이자	9,027	26.8%	8,340	25.2%	7,359	24.4%	6,217	22.5%
합계	33,638	100.0%	33,099	100%	30,142	100.0%	27,622	100.0%

¹ 비중은 총 투자자산의 장부가액 대비 비중임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회사의 총 투자자산 중 상환순위가 열위한 후순위대출 및 지분증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회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운영기간 내에 투자자산의 회수가 능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법인 관련 의사결정 영향력에 따른 위험

회사는 총 20개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법인 또는 해당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채무 및 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그러한 투자법인들의 경영에 대해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 투자법인들은 회사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법인들의 업무 수행, 전략, 정책 등에 대해 회사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회사가 현금을 창출하고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투자법인 일부에는 다른 투자자들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투자자들은 회사와 그 투자목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투자법인 내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회사가 선임한 이사 또는 이사들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안건 결의에는 다른 주주 또는 다른 주주들이 선임한 이사들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투자법인들의 영업, 배당, 이자지급, 기타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제한적인 영향력만 행사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금리 상승 관련 위험 (투자법인)

회사가 투자한 일부 투자법인들은 변동 금리부 선순위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위채무와 관련된 조건에 따르면, 해당 투자법인들은

주주배당이나, 후순위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전에 선순위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러한 투자법인들은 선순위채무에 대해 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배당형태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의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투자법인 운영성과 관련 위험

1) 컨테이너 항만 사업 투자법인 운영성과 관련 위험

2019년 4월, 회사가 투자한 부산항신항 2-3단계 사업의 시행자인 (주)비엔씨티(이하 "BNCT")는 향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용량 증설과 유동성 개선을 목적으로 신규 대주단과 기존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신규로 외부차입금을 조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로 회사의 BNCT에 대한 투자자산의 원금은 3,040억원(후순위대출 I 1,930억원, 후순위대출 II 446억원, 지분증권 664억원)에서 2,594억원(후순위대출 1,930억원, 지분증권 664억원)으로 감소하였고, BNCT는 신규 외부차입금의 일부를 추가설비 투자용으로 활용하여 부산항신항 2-3단계의 연간 최대 처리가능 용량을 기존 250만 TEU에서 300만 TEU로 증설하였습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회사는 BNCT에 후순위대출 1,930억원과 지분증권 664 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후순위대출 관련 미수이자 5,690억원입니다.

BNCT는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을 포함하지 않은 실시협약을 체결한 자산으로 영업수익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투자자들에게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유료도로 사업 투자법인 운영성과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14개의 유료도로 사업 중 7개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들은 정부 재정지원 수입에 일부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각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

의 근간이 되는 통행료 및 교통량은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물가 상승률, 유류비, 인구 수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통행료 또는 교통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투자자들에게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도시가스 및 열전기 사업 투자법인 운영성과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3개의 투자법인(영산클린에너지(유)를 통해 투자한 (주)해양에너지, 보문클린에너지(유)를 통해 투자한 서라벌도시가스(주), 씨엔씨티에너지(주)를 뜻하며, 이하 동일)은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시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가스) 공급업은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여 지역별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들에게 공급하고, 각 지역별 소매사업자들은 공급받은 LNG를 각사 배관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및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들은 도시가스 생산의 주연료인 LNG를 한국가스공사(KOGAS)와의 장기수급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들의 연료비용,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도시가스 소매단가에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의 전가와 관련된 정책의 변경 등이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소매업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권역(이하 "공급권역") 내 소매단가가 하락하거나 도시가스 수요가 감소할 경우 이는 해당 도시가스 소매업자들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수요는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기온, 연료 경쟁력 등 다양한 외부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도시가스 소매업자들의 공급권역 내 소매단가가 하락하거나 도시가스 수요가 감소할 경우,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들은 실제 도시가스 공급량과 계측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의 차이로 인한 수율 효과로 판매량이 공급량보다 높은 잉여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측정오차는 기체의 특성, 기술적 오차, 검침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데 만일 정부 등의 정책 또는 기타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측정오차가 수정되어 수율이 하락하는 경우 이는 회사가 투자한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24년 상반기 기준 회사가 투자한 씨엔씨티에너지(주)의 열전기 사업 중 산업체에 공급하는 스팀 매출은 상위 4개 고객(이하 본항에서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 물량이 총 스팀매출 물량의 약 8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주요 고객이 스팀 사용량을 줄이거나, 주요 고객의 설비에 대한 화재 등 사고 발생으로 스팀 사용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열전기 사업의 스팀 매출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데이터센터 사업 투자법인 운영성과 관련 위험

마지막으로, 회사가 그린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투자한 하남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그린디지털인프라(주)는 궁극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데이터센터에 공실이 발생하거나 임대료가 하락할 경우 임대료수익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그린디지털인프라(주)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남 데이터센터의 임차인인 (주)엘지씨엔에스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본 데이터센터 전체를 임차하면서 목표 IT 부하(25.44MW)의 99% 수준에 대해 사용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여러 데이터센터 이용자와 데이터센터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각 데이터센터 이용자로 하여금 각 데이터센터 이용계약에서 규정하는 데이터센터 일부 공간에 서버랙, 서버, 저장장치 등을 이용자의 자체 비용으로 설치, 유지보수, 관리하며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 데이터센터가 수입원 중 하나이고 관련 시장 점유율 확보에 기여하는 자산인 점, 데이터센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서버 및 각종 기계설비 등 관련 자산의 특성상 이탈 시 대규모 자본적 지출(CAPEX)과 이주비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임차인 또는 데이터센터 이용자의 이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갱신/재계약 시점에서는 현재 예견하기 어려운 데이터센터 수요 하락, 수도권 데이터센터 공급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갱신/재계약 시의 임대료, 약정 사용량 등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하남

데이터센터 사업의 수익성은 예상 대비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임차인의 도산,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사유 등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회사의 영업실적 및 현금흐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존재하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컨테이너 항만 사업 투자법인 운영성과 관련 위험

회사는 부산 신항에 위치한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신항 2-3단계 사업을 운영하는 BNCT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BNCT는 2012년 1월 운영을 개시하였고, 2024년 6월 30일 현재 회사의 BNCT에 대한 투자자산의 원금은 2,594억원으로, 이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후순위대출 1,930억원과 지분증권 66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 BNCT는 향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용량 증설과 유동성 개선을 목적으로 신규 대주단과 기존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신규로 외부차입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로 회사의 BNCT에 대한 투자자산의 원금은 3,040억원(후순위대출 I 1,930억원, 후순위대출 II 446억원, 지분증권 664억원)에서 2,594억원(후순위대출 1,930억원, 지분증권 664억원)으로 감소하였고, BNCT는 신규 외부차입금의 일부를 추가설비 투자 용도로 활용하여 부산항신항 2-3단계의 연간 최대 처리가능용량을 기존 250만 TEU에서 300만 TEU로 증설하였습니다.

[부산항 신항 2-3단계 자산 개요]

- 2012년 1월 터미널 운영 개시
- 28년 3개월 관리운영권 (2040년 4월 만기)
- 부두 길이: 1,400m (4선석)
- 물동량 처리능력: 연간 최대 300만 TEU
- 아시아 최초의 수직 배열 자동화 터미널
- 주요고객: Ocean Alliance

(출처: 회사 제시 자료)

[BNCT 최근 실적]

구 분	2024년 상반기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처리 물동량 (TEU)	1.36백만	2.72백만	2.69백만	2.48백만	2.23 백만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증가율	(3.6%)	1.1%	8.8%	10.8%	0.5%
매출액 (십억원)	78.1	159.6	167.0	145.9	122.2
전년 동기 대비 수익 증가율	(5.7%)	(4.5%)	14.5%	19.5%	8.0%
EBITDA (십억원)	35.5	76.9	84.5	75.2	61.1
전년 동기 대비 EBITDA 증가율	(14.2%)	(9.1%)	12.4%	23.1%	15.5%
EBITDA 마진	45.5%	48.2%	50.6%	51.6%	50.0%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① 물동량 실적

BNCT는 BNCT의 주주인 Terminal Link의 모회사 CMA CGM을 주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BNCT는 각 선사와 항만하역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MA CGM과 BNCT 사이의 항만하역계약상 controlled service로 분류된 물동량은 BNCT로 기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은 BNCT의 관리운영권 존속 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CMA CGM은 2017년 4월 1일 정식 출범한 글로벌 해운동맹 Ocean Alliance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Ocean Alliance는 현재 CMA CGM, APL, 코스코, 에버그린, OOCL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항 의무가 없는 일부 Ocean Alliance 소속 선사들도 비용 절감 및 서비스 편의 등의 이유로 BNCT로 기항할 유인이 있습니다.

다만, CMA CGM을 포함한 Ocean Alliance를 구성하는 선사들은 BNCT에게 특정 물동량을 보장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CMA CGM 및 Ocean Alliance의 물동량이 감소할 경우 BNCT의 물동량 실적도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해운산업은 거시경제 및 대외 무역 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경제 침체,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한 글로벌 물동량의 하락 및 한국 수출입 감소 등의 환경 변화는 BNCT의 물동량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NCT의 2024년 상반기 총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1.36백만 TEU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하락한 781억원을 기록하였고, EBITDA는 전년 동기 대비 14.2% 하락한 355억원을 기록하며 EBITDA 마진은 45.5%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주 원인은, 경기 둔화, 국내외 타 부두와의 경쟁 심화,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증대가 물동량 및 매출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에 기인합니다.

② 하역료

BNCT 및 부산 신항 내의 하역료는 다양한 경제 상황, 신항 내 물동량 공급 및 수요 상황, 국내외 항만 경쟁구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 4월 해운동맹 개편으로 일부 서비스에 대한 하역료 하향 조정이 있었으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 10년간 BNCT의 평균 하역료(총 매출을 처리 물동량으로 나누어 계산)는 연평균성장률 2.6%을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평균 하역료는 운임 조정률, 물동량 구성(환적, 수출입 등), 컨테이너 종류 및 부가수입 등 여러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후순위 채무

2024년 6월 30일 기준 BNCT 후순위대출 원금은 1,930억원이며 미지급이자 총 5,690억원으로, 미지급이자를 포함한 후순위대출 규모는 총 7,620억원입니다.

2019년 4월, BNCT는 신규 대주단과 기존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신규로 외부차입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로 회사는 BNCT에 대한 후순위 채무 중 후순위대출 II에 대한 원금 446억과 관련 연체이자 492억원을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 종결 후 회사의 BNCT에 대한 후순위 채무 원금은 2,376억원(후순위대출 I 1,930억원, 후순위대출 II 446억원)에서 1,930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9월 27일 BNCT의 이사회는 경영환경 및 영업활동 개선을 목적으로 후순위대출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2년 9월 28일 BNCT와 후순위대출 대주인 회사는 상호 합의 하에 본건 조건 변경에 상응하는 변경된 후순위대

출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이후부터 BNCT의 후순위 대출 원금 및 기 발생한 이연이자에 대한 이자 적용 방식은 기존 복리에서 단리로 변경되며, 이자율(연 12%), 이자 지급 주기(분기별), 원금 규모(1,930억원) 등은 변동 없습니다.

추가로, 2024년 4월 30일 회사와 BNCT는 지속되는 경기 둔화, 국내외 타 부두와의 경쟁 심화,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증대 등 최근 급변한 경영환경이 중장기적으로 BNCT의 실적 및 그에 따라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여 BNCT의 후순위대출 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변경된 후순위대출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아래 변경은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이자율	연 12% 고정	BNCT의 연간 실적 및 유동성에 연동(주1) 되어 매 분기 연 6~12% 내에서 변동
이자(주2) 상환 순서	1) 발생이자 2) 신규 누적 이연이자 3) 과거 누적 이연이자	1) 과거 누적 이연이자 2) 신규 누적 이연이자 3) 발생이자

주1) [직전연도 연간 EBITDA 및 직전연도 말 기준 가용 가능한 현금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연도 이자지급일(각 분기말) 기준 후순위대출 원금 잔액 및 과거 누적 이연이자 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눈 결과값을 토대로 조정되며, “ 직전연도 말 기준 가용 가능한 현금”은 직전연도 말 기준 각종 적립금이 미포함 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i) 당해연도 선/중순위 원리금 지급액, 후순위 원금 상환액,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자원, (ii) 당해연도 필요한 운전자금을 제하여 산정함

주2) BNCT 후순위대출 이자는, (i) 해당 이자지급기간(분기)에 신규로 발생하는 이자(이하 “ 발생이자”), (ii) 2022년 10월 1일부터 누적되는 이연이자(이하 “ 신규 누적 이연이자”), (iii) 2022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이연이자 4,425억원(이하 “ 과거 누적 이연이자”)로 구분되며, 이 중 과거 누적 이연이자자는 후순위대출 원금과 동일하게 이자를 부리함

[후순위 채무 내역]

(기준일 : 2024년 6월 30일)

구 분	후 순위
원금	1,930억원
미지급이자	5,690억원
인출일	2008-02-25
만기일	2032-11-25
고정금리	12% (2024년 7월 1일부터 변동금리 6% ~ 12%로 변경)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BNCT는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을 포함하지 않은 실시협약을 체결한 자산으로 물동량 실적이 저조하거나 하역료가 동결 혹은 하락하여 매출액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액 악화는 BNCT의 현금 부족으로 이어져 후순위 대출금(회사가 전액 보유)의 연체이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회사가 보유한 (가) BNCT 후순위 대출금의 미수이자 또는 원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 지분에 대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BNCT의 사업 종료 시점까지 회사가 잔여 후순위대출 원리금 및 지분투자 원본(664억원)을 상환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유료도로 사업 투자법인 운영성과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총 14개의 유료도로 사업 중 7개(백양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수정산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 마창대교, 서울-춘천 고속도로, 인천대교)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통행실적에 따른 통행료 수입 부족분(최소통행료수입보장금), 투자비 보전금 및 통행료 관련 보전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로 운영 사업시행자들의 수입은 실시협약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수입에 일부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통행료는 관련 사업시행자와 정부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시협약상 도로 통행료는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통행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물가 상승률, 교통량 등과 같은 실시협약 외부요인들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정부 당국은 향후에 통행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사업재구조화 또는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통량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 통행료
- 유류비
- 차량가격 및 차량유지비용
- 유료도로(교량 및 터널 포함)를 이용하는 차량의 종류
- 인구증가, 자동차 소유증가 및 운전가능 인구수의 증가
- 홍수, 지진, 산불과 같은 자연 재해의 발생
- 전염병, 전염병의 대유행(팬데믹) 등의 질병 발생에 따른 통행수요 감소
- 폭설, 안개, 비와 같이 운전을 어렵게 하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기상 조건
-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와 같이 환경관련 법규
- 철도를 포함한 다른 경쟁관계에 있는 교통수단이나 다른 도로와 비교 시 유료도로의 질과 접근성
- 일정한 기간 중에 유료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차량 수에 대한 제한
- 일반적인 경제환경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 유료도로 사업의 교통량이 감소할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수입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정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유료도로 사업은 주무관청의 최소수입보장(또는 재구조화에 따른 주무관청의 기타 보장을 포함하며 이하 본 문단에서 총칭하여 "보장") 여부, 보장 수준 대비 실제 운영 실적, 실시협약기간 대비 보장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분류의 특성 및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무관청의 보장이 없는 사업

현재 주무관청의 보장이 없는 사업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터널,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인천-김포 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면산터널 사업은 2016년 1월에 체결한 사업재구조화로 실시협약에서 MRG를 삭제하고, 수입분할관리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입분할관리방식에 따라 회사가 투자한 자본금 및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익을 먼저 수취할 수 있도록 실제 통행료수입 중 협약상 합의된 금액을 처분가능사업수입계좌에 우선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예측하고 있는 향후 처분가능사업수입은 회사의 기대수익을 실현

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예상되나, 예측과 달리 통행료수입이 저조하여 처분가능사업수입이 불충분한 경우, 회사가 투자한 자본금 및 대여금의 원금 혹은 이익의 일부를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및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은 본래 주무관청의 최소수입보장이 있었으나, 각 2022년, 2020년, 2019년에 종료되었습니다.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인천-김포 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매출 또는 비용 관련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주무관청의 보장이 있으나, 현재 보장수준을 초과하는 운영실적(통행량)을 달성하고 있는 사업

현재 주무관청의 보장은 있지만, 2023년도 실적 기준 보장수준을 초과하는 운영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사업은 인천대교, 마창대교,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보장수준을 초과하는 운영실적으로 회사 수익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향후 각 사업의 운영실적이 하락할 경우 이는 각 사업의 즉각적인 현금흐름의 하락으로 이어지기에 주무관청의 보장은 현 시점에서 전망되는 투자자산의 가치, 회사 수익률 및 현금흐름 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주무관청 보장이 있고, 최소수입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실적으로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시협약기간 도중 주무관청의 보장이 만료되는 사업

현재 주무관청 보장이 있고, 2023년도 실적 기준 최소수입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실적으로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시협약기간 도중 주무관청의 보장이 만료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업이 존재할 경우,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보전금은 해당 사업에서 비롯되는 회사 수익률 및 현금흐름의 하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향후 운영실적이 큰 폭으로 향상되지 않는 이상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 보장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거 보장기간 대비 수입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회사 수익률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보장기간 대비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 보장이 있고,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실적으로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의 보장이 전체 운영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사업

주무관청 보장이 있고,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실적으로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의 보장이 운영 전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사업은 2023년도 실적 기준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광주 제 2순환도로 3-1구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실적을 내며 보전금을 지원받고 있고, 주무관청 보장 또한 전체 운영기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의 다른 유료도로 사업 대비 운영실적의 하락이 회사의 수익률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가 타 도로사업대비 상대적으로 적으나, 기대 투자수익의 실현을 위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주무관청의 보전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다른 형태의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주무관청의 보장이 없거나 보장의 기간 또는 수준이 부분적으로만 존재하는 사업들의 통행료 수입이 저조할 경우, 해당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수입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정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도시가스 및 열전기 사업 투자법인 운영성과 관련 위험

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3개의 투자법인은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시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가스) 공급업은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여 지역별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들에게 공급하고, 각 지역별 소매사업자들은 공급받은 LNG를 각사 배관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및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① 도시가스 가격 관련 정책의 변경 위험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들은 도시가스 생산의 주연료인 LNG를 한국가스공사(KOGAS)와의 장기수급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들의 연료비용,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도시가스 소매단가에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의 전가와 관련된 정책의 변경 등이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② 도시가스 수요 하락 위험

도시가스 소매업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권역(이하 "공급권역") 내 소매단가가 하락하거나 도시가스 수요가 감소할 경우 이는 해당 도시가스 소매업자들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수요는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기온, 연료 경쟁력 등 다양한 외부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도시가스 소매업자들의 공급권역 내 소매단가가 하락하거나 도시가스 수요가 감소할 경우,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수율 하락 위험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들은 실제 도시가스 공급량과 계측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의 차이로 인한 수율 효과로 판매량이 공급량보다 높은 잉여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측정오차는 기체의 특성, 기술적 오차, 검침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데 만일 정부 등의 정책 또는 기타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측정오차가 수정되어 수율이 하락하는 경우 이는 회사가 투자한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24년 상반기 기준 회사가 투자한 씨엔씨티에너지(주)의 열전기 사업 중 산업체에 공급하는 스팀 매출은 상위 4개 고객(이하 본항에서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 물량이 총 스팀매출 물량의 약 8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주요 고객이 스팀 사용량을 줄이거나, 주요 고객의 설비에 대한 화재 등 사고 발생으로 스팀 사용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열전기 사업의 스팀 매출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데이터센터 사업 투자법인 운영성과 관련 위험

마지막으로, 회사가 그린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투자한 하남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그린디지털인프라(주)는 궁극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데이터센터에 공실이 발생하거나 임대료가 하락할 경우 임대료수익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그린디지털인프라(주)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남 데이터센터의 임차인인 (주)엘지씨엔에스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본 데이터센터 전체를 임차하면서 목표 IT 부하(25.44MW)의 99% 수준에 대해 사용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여러 데이터센터 이용자와 데이터센터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각 데이터센터 이용자로 하여금 각 데이터센터 이용계약에서 규정하는 데이터센터 일부 공간에 서버랙, 서버, 저장장치 등을 이용자의 자체비용으로 설치, 유지보수, 관리하며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 데이터센터가 수입원 중 하나이고 관련 시장 점유율 확보에 기여하는 자산인 점, 데이터센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서버 및 각종 기계 설비 등 관련 자산의 특성상 이탈 시 대규모 자본적 지출(CAPEX)과 이주비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임차인 또는 데이터센터 이용자의 이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갱신/재계약 시점에서는 현재 예견하기 어려운 데이터센터 수요 하락, 수도권 데이터센터 공급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갱신/재계약 시의 임대료, 약정사용량 등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하남 데이터센터 사업의 수익성은 예상 대비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임차인의 도산,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사유 등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회사의 영업실적 및 현금흐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존재하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이 대상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수리 또는 관리를 위해 소요하는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은 당초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 금액이 당초 추정치를 상회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은 회사가 사업시행자에 제공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 중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들의 경우,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은 사업시행자가 채무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와 관련 정부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해지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들께서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가 투자한 3개의 도시가스 사업의 경우, 연료비용,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도시가스 소매단가에 포함됩니다. 만약 공급비용 산정 관련 위 투자법인과 도시가스사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해당 비용들 중 일부가 공급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등 투자법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과 무관한 비핵심 사업과 관련된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은 공급비용에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추정치를 상회하는 비핵심 사업 관련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은 위 투자법인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세부적인 산정기준이 존재하고 회계기관 등의 외부검증 등을 거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이 클 가능성은 높지 않은 부분 및 위 투자법인의 비핵심 사업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인 부분을 고려하면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 관련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센터의 운영에는 주기적인 시설의 유지, 관리, 보수 업무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회사가 그린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투자한 하남 데이터센터의 경우 임차인을 통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남 데이터센터의 경우 2025년 6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는 2, 3단계 구축공사 이후에는 단기간 내에 추가적인 대규모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대규모 수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초과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수취하는 수익이 감소하거나 현금흐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소송 관련 위험

- 고용노동부의 민자사업법인 현장 조사 :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에 국내 50여개의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각 법인의 용역계약에 따른 도로유지관리, 요금징수, 순찰업무 등을 수행하는 외주용역 근로자들의 사용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각 법인에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회사가 투자한 12개의 유료도로 사업 중 11개 사업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마창대교의 경우 외주 용역회사에 소속된 일부 직원을 당초 해당 직원의 소속 법인이었던 (주)마창대교에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아 그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위 조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투자한 천안-논산 고속도로(주)의 경우 고용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천안-논산 고속도로(주)와 요금징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은 2020년 2월 및 3월, 두 차례에 걸쳐 천안-논산 고속도로(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차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3년 2월 8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관할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주)의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반면, 임금차액청구소송에서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주)의 임금차액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판결 후 해당 사건은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및 요금징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이 각각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최종 소송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소송 결과가 법인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회사가 투자한 (주)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주무관청인 경상남도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약 34억원 규모의 미지급 재정지원금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시행법인과 주무관청은 2017년 1월 26일에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업시행법인은 변경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자체적인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후로 주무관

청은 사업시행법인이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2023년에 신청한 재정지원금 총 42억원에서 약 34억원이 제외된 8억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은 변경실시협약의 분쟁해결 방법에서 정한대로 본건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본건 중재는 실시협약 및 ICC 중재 규칙에 따라,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심리를 거쳐 최종 판정될 예정입니다. ICC의 중재 판정은 당사자들에게 최종 구속력을 가지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중재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12개월 내외로 예상하지만 실제 소요 기간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에 추가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투자법인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건설중인 자산 관련 위험

회사가 건설단계에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유료도로, 교량, 터널, 철도와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자연 재해, 설계 변경, 그리고 지역사회나 종교, 환경 단체와 같은 특수 이익집단의 반대 등의 잠재적인 위험이 뒤따릅니다.

비록 대다수 위험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시공사 또는 관련 정부에게 이전될 수 있으나, 이러한 위험들이 발생할 경우 공사 지연, 수익 손실과 비용초과 등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투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회사가 투자한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이 적기에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수입 감소와 유지비용 증가, 그리고 공사 혹은 재공사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한 사회기반시설 모두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해당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보험금을 통해 그러한 손실이나 피해를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통상적으로 그러한 보험금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선순위 대출기관에게 담보로서 질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완공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는 관련 정부 당국에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비록 시공사는 통상적으로 건설지연으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러한 배상은 사업시행자의 모든 의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들은 건설지연으로 심각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동북선 도시철도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건설 관련 위험

현재 건설단계에 있는 동북선 도시철도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2024년 착공 예상)의 경우, 인허가 완료 및 착공 후 건설 지연 위험에 대하여는 관련 건설사들이 확정가격일괄도급방식(Fixed Price & Lump Sum Turn-key Base)의 기한내 책임준공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며, 공사지연 및 소요자금증가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이러한 건설사들의 책임준공 의무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신용등급하락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하남 데이터센터 잔여 구축공사 관련 위험

또한, 2, 3단계 구축공사 진행 중에 있는 하남 데이터센터(2025년 6월 공사 완료 목표)의 경우, 이미 준공이 완료된 건물의 일부 층에 한하여 추가적인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점을 고려할 때 준공 전 건설공사에 비해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건설 지연 위험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임대인인 그린디지털인프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임대인인 그린디지털인프라(주)의 임대차계약상 의무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인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8) 투자자산 관련 불가항력 및 기타 위험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가 운영하게 되는 자산에는 유료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데이터센터, 관련 구조물, 기타 운송장비, 컴퓨터 시설, 건물, 주차시설, 가스 배관, 전력공급 설비, 네트워크 시설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자산들은 화재, 홍수,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인재에 속하는 테러 등의 위험, 설계나 공사의 결함, 경사도 예측 실패, 교량과 터널 붕괴, 도로 함몰, 노동 쟁의, 심각한 교통사고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사건들에 의해 방해 받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사건들이 유료도로와 교량, 터널, 철도, 항만, 가스 배관, 데이터센터 등에 실제 영향을 끼쳤으며,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들이 운영하는 유료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가스 배관, 데이터센터 등에 언제라도 이러한 사유로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 시설물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시행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유지비와 복구 비용을 증가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투자한 모든 사업시행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를 제외한 전쟁, 테러 등의 불가항력적 위험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의하여 부보되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회사의 영업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금으로 손실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가 가입한 보험청구액이 유료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가스 배관,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설계, 공사, 유지의 하자나 또는 이로 인한 수입 감소와 비용 증가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기에 충분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관련 법률 위험

회사가 투자한 총 20개의 투자법인 중 16개의 투자법인은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 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도로, 항만, 철도, 학교, 디지털 시설(데이터센터),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법 등 회사와 회사의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회사의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유료도로법」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고, 이는 투자사업 중 민자도로사업의 비중이 큰 회사에 향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투자한 3개의 투자법인은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은 설비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시가스업체에게 지역별 독점권을 부여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며, 향후 이러한 독점 공급구도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 등 회사와 회사의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회사의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투자한 총 20개의 투자법인 중 16개의 투자법인은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 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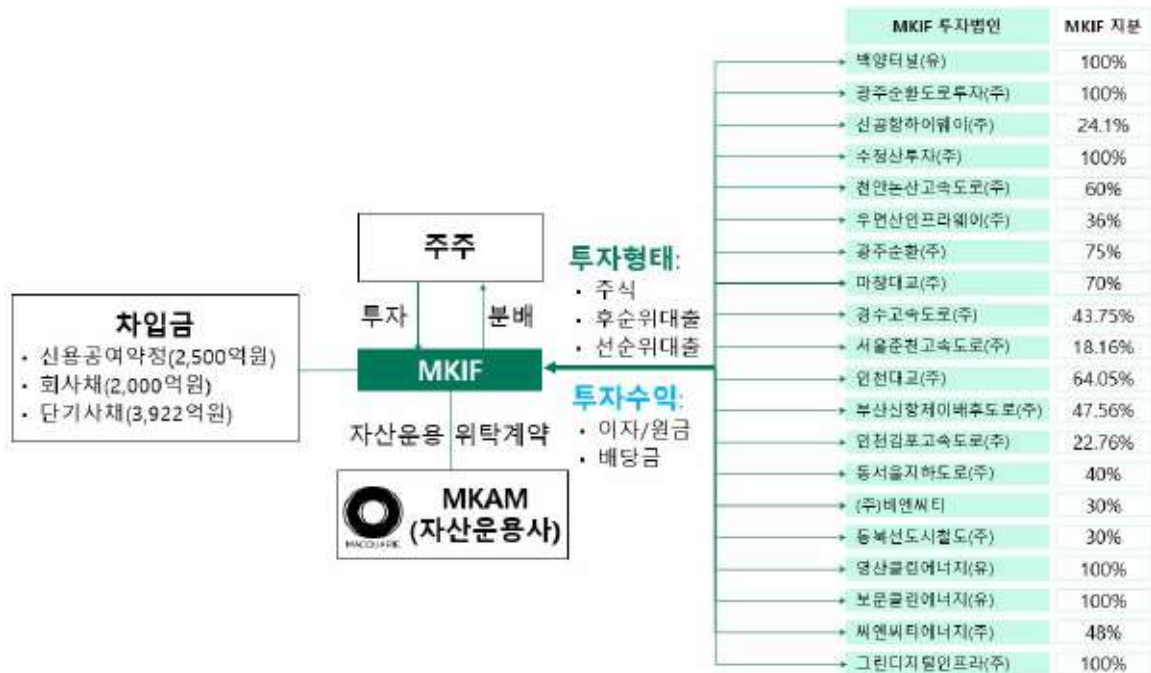
회사는 2002년 12월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며, 회사의 사업 역시 민간투자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민간투자법 제41조의2,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10억원 이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회사의 이사회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구성되고, 2인 이상의 감

독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면서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관련 규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투융자회사에도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p> <p>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p> <p>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10억원 2. 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50억원</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p> <p>[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p>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 또는 운영하는 법인에 출자, 용자 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현재 도로(교량 및 터널 포함), 항만, 철도, 도시가스, 데이터센터 등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 또는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 등 민간투자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투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투자구조]



회사 투자구조

주) 2024년 6월 30일 회사의 투자금액 기준(그린디지털인프라(주) 포함; 2024년 7월 30일에 그린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매입 약정한 하남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약정금 전액이 투자됨을 전제하였고, 실제 투자 집행은 2024년 8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

또한,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3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규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p> <p>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p> <p>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 관련법규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한편, 민간투자법 제44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81조의 "자산운용의 제한" 규정은 회사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의 나. 투자제한 참조).

회사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준법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법률 및 하위 규정의 불리한 해석, 관련 법률 및 규제의 변경, 신규법 제정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의 법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런 법률 환경의 변화가 회사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은 특히 정부의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중에도 정부의 세무관련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법령의 변경 및 해석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투자법인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에 투자한 투자회사의 대출채권이나 지분투자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유료도로법」은 민간투자사업의 근거법인 민간투자법과 별도로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에 대한 적용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의 중대한 사정 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유료도로법」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

구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이에 따라 민자 도로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권한은 강화된 반면 사업자의 재량권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이 향후 회사의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가 투자한 3개의 투자법인은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시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공급업은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여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게 공급하고, 각 지역별 공급자들이 공급 받은 LNG를 각사 배관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전력, 통신산업 등과 같은 기간산업의 하나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초기투자(배관투자 및 안전관리투자)가 요구되며, 국가 경제상 중요 에너지원으로서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일정 공급권역을 승인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독점적인 산업의 특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은 지역별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소매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결정됩니다.

정부에서 지역별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주된 이유는 배관설비투자 등을 위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도시가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설비의 중복투자 방지 및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설치되어 있는 배관설비 등을 감안시 독점공급권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경 및 신규 도시가스 업체의 진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복수 업체 허용 등 정부정책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회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요금과 관련하여 회계기관 등의 외부검증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도시가스요금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조례는 향후 재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경쟁 시설 신설 위험

회사가 투자한 유료도로 사업 중 현재 경쟁교통시설의 신설 가능성이 파악된 사업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사업입니다. 해당 유료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모두 관련 실시협약상 경쟁방지 조항에 따라 경쟁교통시설의 신설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매출 감소분에 대해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실제 보상 규모가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니 투자 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가 투자한 3개의 투자법인은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은 설비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시가스업체에게 지역별 독점권을 부여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며, 향후 이러한 독점 공급구도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 등 회사와 회사의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회사의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교통시설은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2021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¹ 제3연륙교의 예상 개통시기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이내에 있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교통시설은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서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2019년에 착공되어 단계적으로 개통(평택-부여 구간 2024년 개통 예상, 부여-익산 구간 2034년 개통 예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²,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16년에 착공되어 단계적으로 개통될 것으로 예상³ 됩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안성-구리, 세종-안성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래 안성-구리 구간은 2022년 중 개통, 세종-안성 구간은 2024년 중 개통을 목표하였으나, 건설 공기 연장으로 양 구간 모두 목표 일정 대비 1~2년 가량 지연되고 있습니다⁴. 해당 경쟁교통시설의 예상 개통시기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이내에 있습니다.

경쟁도로가 개통될 경우 회사가 투자한 위 유료도로의 통행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 유료도로의 실시협약은 경쟁도로의 신설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협약상 보상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주무관청과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대교(주)는 실시협약상의 보상조항에 대한 주무관청과의 해석의 차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2020년 6월 ICC로부터 중재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쟁도로의 개통과 관련한 실시협약상의 보상조항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의 해석에 대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량 감소의 효과가 완전히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3개의 투자법인은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시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공급업은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여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게 공급하고, 각 지역별 공급자들이 공급받은 LNG를 각사 배관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전력, 통신산업 등과 같은 기간산업의 하나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초기투자(배관투자 및 안전관리투자)가 요구되며, 국가 경제상 중요 에너지원으로서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일정 공급 권역을 승인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독점적인 산업의 특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은 지역별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소매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결정됩니다.

정부에서 지역별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주된 이유는 배관설비 투자 등을 위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도시가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설비의 중복투자 방지 및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설치되어 있는 배관설비 등을 감안시 독점공급권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경 및 신규 도시가스 업체의 진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복수 업체 허용 등 정부정책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회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21. 3. 8.)
-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 12. 3.)
-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 12. 26.)
- 4 최근 기사(2023. 3.26. 중부일보 기사 등)

(11) 주무관청 및 기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의무 미이행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총 20개의 사업시행법인(이하 "투자법인") 중 16개의 투자법인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주무관청과 체결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필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주무관청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 주무관청의 재정상 어려움 또는 기타 이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법인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련하여 사업재구조화 또는 소송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들에게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가 투자한 3개의 투자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과 체결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MOU) 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위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필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 또는 기타 이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가 추가 투자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자들에게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투자한 총 20개의 투자법인 중 16개의 투자법인은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이고, 그 외 4개의

사업은 특정 사업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영속사업(비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투자법인입니다.

[투자법인 사업시행/운영 및 재정지원 기간]



투자법인 사업시행, 운영 및 재정지원 기간_1

주1) 2024년 6월 30일 기준 회사 투자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을 산정함 (그린디지털인프라(주) 포함; 2024년 7월 30일에 그린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매입 약정한 하남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약정금 전액이 투자됨을 전제하였고, 실제 투자 집행은 2024년 8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

주2) 최소통행료수입보장금, 최소처분가능수입보장금, 비용보전금, 기타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보전금 등을 포함. 통행료 미인상 보전금은 통상 실시협약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되므로 가중평균 재정지원 적용기간은 그 외 재정지원 기간들을 고려하여 산정함

주3) 투자법인들은 관련 실시협약상, 투자법인 귀책사유, 정부 귀책사유 그리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기간 종료 전에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상당액의 해지시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주4) 건설(주무관청 예상 건설기간 적용) 후 실시협약기간인 30년 동안 운영됨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은 각 계약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 중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급의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급의무]

구분	내용
<p>최소운영수입보장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보전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운영기간 동안 운영수입 실적이 당초 실시협약의 추정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시협약상 정해진 한도까지 주무관청이 부족분을 보전하여 주무관청이 시장위험을 일부 부담합니다. - 과거 민간투자자 유치, 외부차입금 조달 지원, 운영초기 불확실성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실시협약에 MRG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당시에는 MRG 수준이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채무상환능력 판단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정부는 현재 신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MRG 제도를 폐지하였고, MRG에 따른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는 기존 사업의 사업조건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예: 자금재조달을 통한 이익공유, 사업재구조화 등). 다만, 이는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p>통행료 미인상 차액보전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도로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통행료(이하 "협약통행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통행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자의 수입이 하락한 만큼(예: 통행료차액 x 통행대수 실적)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수입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재구조화된 사업의 경우,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이 아닌 별도의 방식으로 사업자의 수입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p>재구조화 조건에 따른 자금제공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재구조화 조건에 따라 MRG 또는 통행료미인상 차액보전금이 아닌 다른 방식(예: 비용보전)으로 사업시행자가 수취해야 하는 부족액을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보전할 수 있습니다.
<p>사업의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시지급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이 중도 해지될 경우, 실시협약 및 해지사유에 따라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지사유,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요건 및 그 외 지급조건 등과 관련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p>기타 감면금 및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른 추가비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통행료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지역주민할인, 시내버스 할인, 친환경차 할인, 공휴일 통행료 면제 등). 이러한 감면금액 중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요청 또는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통행료 징수 방법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실시협약 및 기타 약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16개의 투자법인 중 7개의 투자법인은 각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최소통행료수입보장금, 최소처분가능수입보장금, 비용보전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회사가 투자한 사업 중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약상 재정지원 이행 의무가 유효한 사업들의 사업시행기간 및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조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정지원 이행 의무가 유효한 투자사업들의 사업시행기간 및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조건 현황]

(기준일 : 2024년 6월 30일)

(단위 : 년)

투자시설명	주무관청	사업 시행기간	잔존 사업 시행 기간	재정지원 기간	잔존 재정지 원기간	수입 보장기준 ¹	수입 환수기준 ^{1 2}	비고
백양터널	부산시	25.0	0.5	25.0	0.5	90%	110%	-
광주제2순환 도로, 1구간	광주시	28.0	4.5	28.0	4.5	투자비 보전 방식		투자법인에 분기별 자금제공금을 지급하여 회 사 투자수익률을 보장
수정산터널	부산시	25.0	2.8	25.0	2.8	90%	110%	실제 통행료수입이 90%에 미달할 경우 수입 부 족분의 91.5%에 대해서만 재정지원금을 제공
광주제2순환 도로, 3-1구간	광주시	30.0	10.4	30.0	10.4	90%	110%	-
마창대교	경상남도	30.0	14.0	30.0	14.0	75.78%	100%	수입보장기준은 처분가능수입계좌에 대해 적용 추정 통행료수입이 100% 초과 시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초과분을 50:50 비율로 공유
서울-춘천 고 속도로3	국토교통부	30.0	15.1	15.0	0.1	60%	140%	
인천대교	국토교통부	30.0	15.3	15.0	0.3	80%	120%	-

1 실시협약상 연간 추정 통행료수입에 대한 실제 통행료수입 비율(%)

2 주무관청이 수입 초과분을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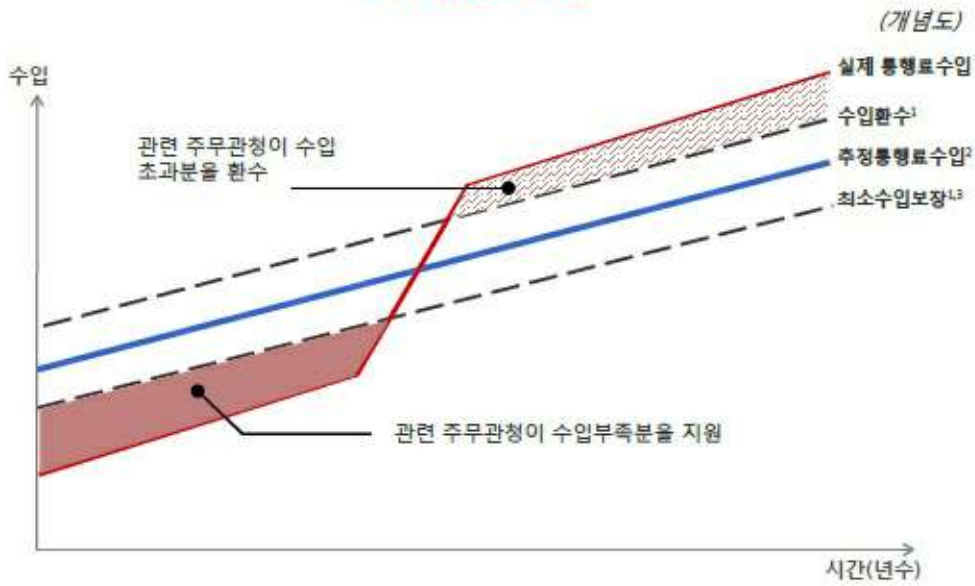
3 실제 통행료수입이 추정 통행료수입의 50% 미만일 경우 최소수입보장이 적용되지 않음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상기 설명된 재정지원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MRG)는 특정운영기간에 실제 운영수입이 당초 실시협약의 추정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한도까지 주무관청이 시장위험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투자비 회수 가능성을 크게 제고하는 장치로서 시기별 및 사업별로 그 수준이 차등 적용되어, 각 사업의 MRG수준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별 채무상환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MRG 지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정부는 2003년부터 보장기간 및 보장수준을 축소하였고, 2006년 민간제안사업, 2009년 정부고시사업에 대해 MRG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MRG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에게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수입보장 구조]

정부수입보장 구조



정부수입보장 구조1

- 물가에 연동하여 일정 수준에서 정부가 통행료수입 지원
- MRG 수준과 수입환수 수준은 실시협약상에 추정통행료 수입과 연동되어 결정 (MRG 수준은 통상 추정통행료수입의 70%~90%선)
- 현재 대한민국 신용등급:
 - S&P : AA (안정적)
 - Moody's : Aa2 (안정적)

정부수입보장 구조2

- 1 최소수입보장과 수입환수조건은 개별자산의 실시협약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다름
- 2 실시협약에 명시
- 3 MRG 적용도로 자산 중 2개 자산은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50% 미만일 경우 MRG가 적용되지 않음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필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주무관청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 주무

관청의 재정상 어려움 또는 기타 이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필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투자법인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해당 투자법인의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악화시키고, 회사가 해당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자 및 원금, 배당금액이 줄어들어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의 지급의무 미이행은 사업재구조화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면산 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각 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MRG 및 통행료미인상 차액 보전금의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 회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업재구조화를 협의하여 주무관청과의 분쟁을 해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시설명	재구조화 시점	재구조화 전 재정지원 조건	재구조화 후 사업구조 요약	재구조화가 회사의 투자사업에 미친 주요 영향
우면산 터널	2016년 1월	운영 전기간 MRG (2023년까지 79%, 2024년부터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분할관리방식¹ 을 도입 사업의 운영비, 주주차입금B(기존 후순위를 재조달) 상환 및 주주배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처분가능사업수입)을 사업수입에서 최우선적으로 매분기 선취하여 적립, 선취하는 금액은 실시협약에서 경상기준으로 정의 선취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수입(처분승인사업수입)을 법인세 지급 및 주주차입금A(기존 선순위 재조달 및 재구조화 비용 추가 조달) 상환을 위해 사용. 부족금액은 주무관청이 부담하고, 잔여금액 또한 주무관청이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투자자산인 주주차입금B 및 지분증권과 관련된 수익 및 원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사업수입에서 우선적으로 선취 미래 통행료수입이 2015년말 통행료수입 대비 약 30% 이상 감소하지 않는 한, 회사가 예상하는 투자수익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 (투자수익이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아니함) 법인세 및 주주차입금A 상환의 위험부담 주체를 주무관청으로 변경 MRG를 대신하여 경쟁도로 방지조항 추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2016년 12월	운영 전기간 MRG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비보전방식을 도입² 운영비용 지급 및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확정지어, 해당 비용이 부족할 경우 매분기 주무관청이 자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구조원상회복 소송 종결 및 기존협약상 분쟁소지가 있던 사항 또한 종결 연체 MRG 보전금 전액 수령 법인세 부담주체를 주무관청으로 변경
마창대교	2017년 1월	운영 전기간 MRG 75.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분할관리방식¹ 을 도입 사업의 운영비, 후순위차입금 상환 및 주주배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처분가능사업수입)을 물가상승을 반영 및 통행량 실적에 비례(추정통행량 100%까지는 68.44%, 100% 초과시 50%)하여 선취 선취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수입(처분승인사업수입)을 법인세 지급 및 선순위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용. 부족금액은 주무관청이 부담하고, 잔여금액 또한 주무관청이 환수 MRG를 대체하여, MRG와 동일한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투자자산인 후순위차입금 및 지분증권과 관련된 수익 및 원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사업수입에서 우선적으로 선취하기에 후순위 원리금이 안정적으로 상환될 것으로 예상 향후 통행량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투자수익 기대 법인세 및 선순위차입금 상환의 위험 부담 주체를 주무관청으로 변경 향후 통행료 관련 분쟁위험을 감소하고, MRG를 대체하는 최소처분가능수입 보장 추가

투자시설명	재구조화 시점	재구조화 전 재정지원 조건	재구조화 후 사업구조 요약	재구조화가 회사의 투자사업에 미친 주요 영향
			(추정 통행료수입 대비 75.78%)에서 주무관청이 최소처분가능수입을 보장	

¹ 사업수입을 처분가능사업수입 및 처분승인사업수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처분가능사업수입계좌 및 처분승인사업수입계좌)로 분할관리 하는 방식. 실시협약에서 사업수입을 어떠한 기준으로 각각의 수입으로 구분하는지 정의하고 있고, 각 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사용목적 또한 실시협약에 정의되어 있음

²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사업에 투자된 자금의 원본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사업시행자의 실제 이자비용 및 투자원본의 상환일정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정의하고, 사업수입이 해당 운영비용 및 투자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주무관청이 자금제공함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한편, 회사가 투자한 3개의 투자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과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MOU) 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필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해각서(MOU)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필요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정책, 주무관청 재정상 어려움 또는 기타 이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가 추가 투자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자들에게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2) 규정 혹은 협약의 불이행에 의한 법적 제재 관련 위험

현재 회사 투자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은 정부기관에 의한 규제를 받는 사업시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러한 대상들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시행자들은 그 해석이나 구속력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정부 허가, 계약 및 그 외 관련 규제나 정책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들이 관련 규제 및 정책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따르지 못한다면, 이들은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당하거나 해당 사회기반시설들에 대한 관리운영권 또는 인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또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동시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시행자들과 정부가 체결한 실시협약 등의 계약은 일반적인 상업계약 보다는 정부 쪽에 더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정부는 정부가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 외에도 사업시행자들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와 정책을 변경하거나 강화하는데 있어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면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3) 주무관청의 명령 및 처분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총 20개의 사업 중 16개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및 실시협약의 당사자로 감독·명령, 사업의 중도해지 및 공익처분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민간투자법상 명시된 제한적인 주무관청의 감독 및 명령 권한을 주무관청이 재량에 따라 폭넓게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최근 시행된 개정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거나 주무관청의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무관청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비록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도록 실시협약상 규정되어 있지만,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시행자의 채무이행, 다른 의무 수행 또는 회사 투자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투자한 3개의 도시가스 사업 관련하여, 주무관청은 도시가스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제한명령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 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비록 도시가스업체의 지역별 독점권으로 인하여 허가의 취소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회사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 요

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명령 및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한 총 20개의 사업 중 16개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며, 주무관청은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및 실시협약의 당사자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감독·명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법에 의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실시공 방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필수적인 유지관리 등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정하여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간투자법 제45조). - 「유료도로법」상 주무관청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23조의2).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의 중도해지 및 공익처분, 실시협약의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협약상 명시된 사업의 중도해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유료도로관리청은 일정한 경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제3항).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권리</p>	<p>상기 외에도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상 명기된 운영평가 및 관리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p>

민간투자법상 명시된 제한적인 주무관청의 권한을 주무관청이 재량에 따라 폭넓게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투자법인 일부는 주무관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 사업위협의 (6) 소송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시협약은 아래와 같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의 사유
- 해당 사회기반시설 건설상의 결함
- 사업시행자의 파산
- 사업시행자의 해산 또는 청산관련 주주의 결의
- 사업시행자의 관련 법규, 실시협약, 정부의 명령에 대한 중대 위반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위한 처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비록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도록 실시협약상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시행자의 채무이행, 다른 의무 수행 또는 회사 투자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해당 민자도로 사업자가 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관련법규

2.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3. 민자도로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민자도로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5.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6.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회사가 투자한 3개의 도시가스 사업 관련하여, 주무관청은 도시가스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행정기관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승인한 각 지방자치단체로 다음과 같은 명령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구 분	내 용
허가의 취소	- 시·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음(「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제1항)
가스공급계획의 변경	- 시·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하는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

구 분	내 용
명령	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음(「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 5항)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	-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음(「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7항)
가스공급의 제한명령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도시가스사업법」 제24조 제2항)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	-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전에 가스공급시설과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음(「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주무관청은 가스공급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 안에 있는 도시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음(「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14) 주무관청의 통행료 인상의무 미이행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14개의 유료도로 사업 및 1개의 철도 사업 관련, 해당 사회 기반시설을 사용하여 혜택을 받는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징수통행료를 협약통행료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정의된 원칙이나, 주무관청의 장 또는 의사결정 기구의 결정에 따라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징수통행료와 협약통행료간의 차액이 커질수록 주무관청이 징수통행료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할수록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분쟁가능성을 높

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한 16개의 민간투자사업 중 14개의 유료도로 사업 및 1개의 철도 사업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협약통행료를 징수하여 수입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는 바,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통행료가 소비자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사업도 있고, 경상가격 기준으로 정해지는 사업 또한 있습니다.

협약통행료가 소비자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인상이 되었을 경우, 최종적으로 징수통행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징수통행료를 협약통행료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정의된 원칙이나, 주무관청의 장 또는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에 따라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주무관청의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금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며, 실제 통행량이 증가할수록 주무관청의 지급의무가 오히려 가중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은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어 징수통행료와 협약통행료간의 차액이 커질수록 주무관청이 징수통행료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할수록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분쟁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보전금의 수령시점이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입 및 현금흐름이 예측한 수준보다 낮아지고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 및 이익배당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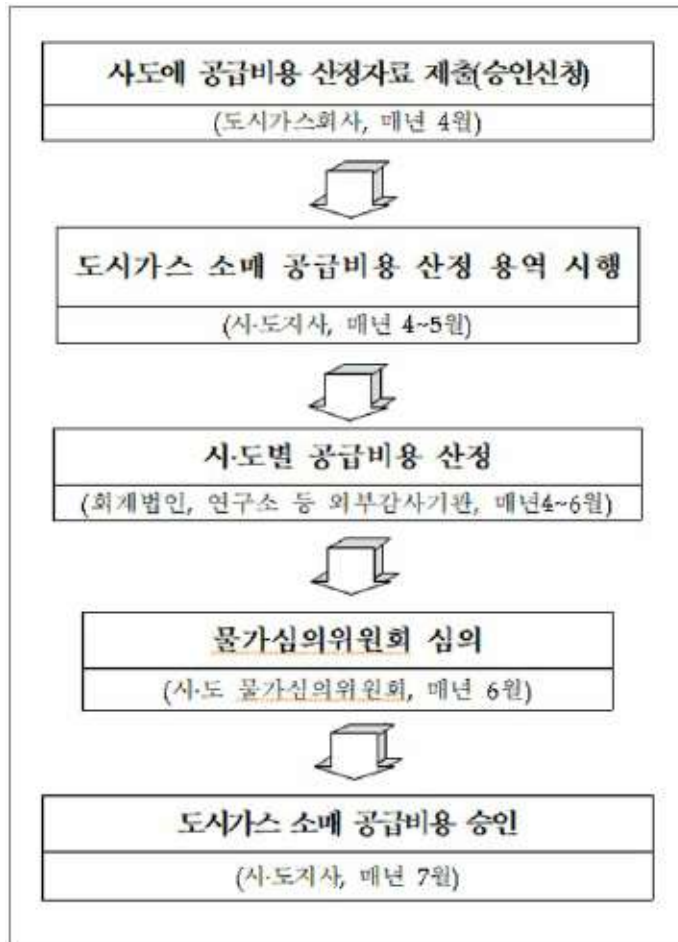
아울러, 실시협약상 통행료 인상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에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물가 수준, 통행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통행료 인하 등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5) 도시가스 소매요금/공급비용 결정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3개의 도시가스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소매공급비용이 가산되어 책정되도록 하고 있고,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도시가스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가스요금인상 규제 혹은 기타 정책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가스사 소매공급비용을 조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한 3개의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원가와 도·소매회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되고, 이 중 소매회사의 공급비용은 공공요금으로서 인상(하)시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감독관청의 요금승인 절차 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소매회사의 소매공급비용은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경제적 특수성, 수요밀집도, 사업력,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총괄원가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회계기관 등의 외부검증과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요금이 결정됩니다.

[시·도에서의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승인절차]



시도에서의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승인절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의 가스요금인상 규제 혹은 기타 정책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가스사 소매공급비용을 조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서 적정원가를 포함한 공급비용에 대하여는 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를 기초로 외부전문기관은 적정원가와 투자보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공급비용 승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것이며, 만약 적정원가를 포함하여 공급비용 산정 관련 도시가스 소매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측은 공급비용 산정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가 권역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시 3% 범위 내에서 적정투자보수를 인정해 요금에 반영해 주는 투자보수가산제도와 관련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도시가스 설비 신·증설 투자 둔화에 따른 투자보수가 인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6) 씨엔씨티에너지(주) 우선주 배당 관련 위험

회사는 씨엔씨티에너지(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연 평균 6%의 배당을 최우선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1종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입금 등 채권과 달리, 씨엔씨티에너지(주)의 잉여 현금 또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배당금이 미지급되거나 그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열전기사업 요금 조정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씨엔씨티에너지(주)의 열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수익구조, 계약구조상 전기, 열, 스팀 요금은 연료 가격 등 관련 원가의 변동에 따라 일정 부분 연동되어 그 조정이 가능하지만, 원가 변동이 요금에 전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원가가 요금에 연동되지 않는 폭이 커지면, 열전기 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LPG, LNG, 외부수열 등 열전기 사업에 필요한 연료 가격이 변동할 수 있음에 반해, 전기, 열, 스팀의 판매 단가가 위와 같은 연료 가격의 변동에 완전히 연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열전기사업 연료(LPG)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씨엔씨티에너지(주)의 열전기 사업의 경우, 사용하는 연료 중에 LPG가 포함되며, LPG는 LNG 등 열전기 사업에서 사용되는 다른 연

료 대비 환경적인 측면(상대적으로 높은 탄소배출량 등) 및 안전 측면(높은 가연성에서 기인하는 위험성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향후 열전기 사업의 LPG 사용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비용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9) 데이터센터 운영 장애 발생 위험

회사가 그린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투자한 하남 데이터센터에는 전산 설비와 전력, 보안시설과 방재시설을 갖춘 데이터센터 상면을 제공하여 고객의 중요한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장애, 정전, 사이버 공격, 컴퓨터 바이러스, 통신 장애 또는 인적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해 동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진, 화재, 홍수 등의 자연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데이터센터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센터 설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되면 데이터센터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시의 적절하게 이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들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소송, 규제 당국의 조사, 책임 및 규제 관련 과징금이 뒤따를 수 있고,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회사의 평판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및 민원 발생 관련 위험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전력 계통/수급 부담이 큰 수도권 내 신규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을 대량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회사가 그린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투자한 하남 데이터센터의 경우 이미 완공되어 신규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데이터

센터 입지 제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거나 관련된 기존 규제가 변경될 경우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자파 발생 우려와 같은 주민 민원으로 인하여 그 사업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린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투자한 하남 데이터센터의 경우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민원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미 운영 중인 자산으로서 전자파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만,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 ESG 정책 강화 등 관련 위험

최근 전세계적으로 ESG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력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등의 ESG 정책이 법제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기업들에서는 RE100 등 ESG 관련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러한 ESG 정책 강화로 인하여 전력 비용 등이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남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력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는 하나, 늘어난 전력비용은 향후 임대차갱신 시에 임대료 협상 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위험요소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사위험

(1) 분배금 지급 관련 위험

안정적인 주주 투자수익률 유지와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

당시 법인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상의 유인 등으로 분배금 지급을 통한 자금소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게는 현금 유입과 회계적 수익 인식간 기간불일치로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며, 2024년 06월 30일 기준 현금 유입 시점이 비교적 중장기 이후로 예상되는 후순위대출 및 지분증권이 투자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4%이므로 분배금 지급으로 현금유출의 수준이 증가할 시 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주의 투자수익률 유지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배당소득공제(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대상이익에서 공제)를 위한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자금소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관에 의거 주주들에게 배당 또는 이익초과분배의 형태로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어, 주주의 투자수익률 유지를 위하여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분배금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분배금 지급을 대신하여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당 분배금 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주당 분배금 실적 추이]

(단위 : 원/주)

구분	2024년 상반기	2023년	2022년	2021년
경상적 이익	380	775	770	750
일회성 이익	-	-	-	-
일회성 손실 ¹	-	-	-	-
총 분배금	380	775	770	750

¹ 초과분배금 포함

주1) 투자자들께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2) 과거의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분배금은 회사의 투자자산인 대출금 및 지분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배당 수익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수익은 운용수익의 70.8%(과거 3개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신공항하이웨이(주), 수정산투자(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광주순환(주),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씨엔씨티에너지(주)에서 정상적인 배당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배당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회사 손익 구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상반기	2023년	2022년	2021년
운용수익	257,472	396,084	376,626	348,352
이자수익	146,458	289,682	268,303	235,381
배당수익 ¹	111,010	106,282	108,033	112,762
기타운용수익	4	120	290	209
운용비용	35,988	69,931	61,450	51,682
운용수수료	24,196	44,774	44,341	41,607
이자비용	9,690	21,555	13,616	7,079
기타비용	2,102	3,602	3,493	2,996
당기순이익	221,484	326,153	315,176	296,670
경상적 당기순이익 ²	221,484	326,153	315,176	296,670
주당순이익 ³	508	782	779	771
주당경상적순이익 ³	508	782	779	771

¹ 배당수익의 구성(일회성 항목 제외)

- 2024년 상반기 : 신공항하이웨이(주) 217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주) 540억원, 수정산투자(주) 170억원, 광주순환(주) 120억원, 우면산인프라웨이(주) 22억원, 씨엔씨티에너지(주) 41억원
- 2023년 : 신공항하이웨이(주) 19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주) 600억원, 수정산투자(주) 135억원, 광주순환(주) 120억원, 우면산인프라웨이(주) 15억원
- 2022년 : 신공항하이웨이(주) 19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주) 600억원, 수정산투자(주) 175억원, 광주순환(주) 113억원
- 2021년 : 신공항하이웨이(주) 132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주) 840억원 및 수정산투자(주) 125억원, 광주순환(주) 30억원

² 일회성 항목(일회성 수익 및 비용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 2021년~2024년 상반기 : 없음

³

- 2024년 상반기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35,781,355주 기준
- 2023년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17,135,115주 기준
- 2022년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04,845,547주 기준

- 2021년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84,895,868주 기준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회사의 주요수익원인 이자수익 관련하여, 회계상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되는 반면 일부 투자법인의 경우 현금 유입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자수익의 현금흐름이 회계상 인식되는 이자수익과 기간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유동성 수요는 증대될 수 있으며 재무적 부담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분배금 지급을 위한 현금유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현금 유입 시점이 비교적 중장기 이후로 예상되는 후순위대출 및 지분증권이 투자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4%라는 점을 감안하여 분배금 지급을 통한 현금유출의 수준이 증가할 시 재무건전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금 조달 불확실성 위험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자금 조달 및 집행은 추가적인 증자, 채권 발행 또는 차입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회사의 자금 조달 계획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투자대안의 유효성, 시기, 그리고 규모 등의 사전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 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② 민간투자법상 회사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회사 자본금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차입금의 사용목적은 투자 및 운영자금에 한합니다.
- ③ 매년 분배가능이익 또는 세무상 이익 중 더 큰 금액의 수준에서 분배하는 회사의 현 분배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면 투자집행을 위한 여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④ 시간적인 제약조건 내지는 발행조건 상 투자자의 수요부족으로 회사는 필요로 하는 물량의 주식이나 사채 발행을 못할 수 있습니다.
- ⑤ 시장여건이나 회사의 사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증자 또는 차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금조달에 실패할 경우 회사의 투자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차입금 관련 위험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라 자본금의 30%까지만 차입 또는 사채발행이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30일 개별 재무제표 기준 회사의 차입부채는 총 4,100억원(원금 기준)으로, 이는 고정금리 회사채 2,000억원, 2,500억원 한도의 신용대출 중 인출금액 1,000억원, 3,922억원 한도의 약정 단기사채 중 인출금액 1,100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라 자본금의 30%까지만 차입 또는 사채발행이 가능하며, 2024년 6월 30일 기준 회사의 차입한도는 8,422억원입니다(억원 미만 절사).

한편, 회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을 목표로 하는 자금 5,000억원의 조달이 완료될 경우, 발행제비용 34억원을 제외한 4,966억원만큼 자본금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회사의 차입한도는 4,966억원의 30%인 1,489억원(억원 미만 절사)만큼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후 회사의 차입한도는 9,911억원(기존 회사의 차입한도 8,422억원 더하기 금번 유상증자로 증액되는 1,489억원의 차입한도)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차입한도 증액 규모 및 유상증자 후의 차입한도는 최종 발행가액 및 이에 연동된 모집 가액이 결정된 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4년 6월 30일 현재 회사가 인출 또는 발행할 수 있는 신용대출 및 단기사채는 총 4,322억원으로 적절한 재무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및 하남 데이터센터 매입 관련 투자약정, 미래의 잠정 신규투자 등으로 인해 차입금이 차입한도까지 증가할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30일 개별 재무제표 기준 회사의 차입부채는 총 4,100억원(원금 기준)으로, 이는 고정금리 회사채 2,000억원, 2,500억원 한도의 신용대출 중 인출금액 1,000억원, 3,922억원 한도의 약정 단기사채 중 인출금액 1,100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입부채는 전기말 대비 36억원 증가하였고, 현금 및 예치금이 전기말 대비 20억원 감소하여 순 차입부채는 5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6월 30일 현재 회사는 대주단과 총 2,500억원을 한도로 하는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약정 주요 내용]

구 분	장기차입금
차입처	(주)국민은행 등
약정 한도액	2,500억원
2024년 6월 30일 사용액	1,000억원
이자율 ¹	기준금리+1.69%
만기	2029년 1월 26일

¹ 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이자율을 기준일 직전 계속거래일 3일간 평균하여 계산됨. 이자금액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에 지급되거나, 대출원금으로 전환될 수 있음.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한편, 회사의 최근 3년간 차입부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차입금 현황]

(단위 : 억원)

약정 한도액	연이자율	2024년 6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2,500	기준금리 ¹ + 1.69%	1,000	964	1,372	201

¹ 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이자율을 기준일 직전 계속거래일 3일간 평균하여 계산됨. 이자금액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에 지급되거나, 대출원금으로 전환될 수 있음.

[사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6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회사채	2,000	2,000	2,000	2,000
단기사채	1,100	1,100	1,510	508
합계	3,100	3,100	3,510	2,508

(출처 : 회사 각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회사 제시 자료)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라 자본금의 30%까지만 차입 또는 사채발행이 가능하며, 2024년 6월 30일 기준 회사의 차입한도는 8,422억 원입니다(억 원 미만 절사).

한편, 회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을 목표로 하는 자금 5,000억 원의 조달이 완료될 경우, 발행제비용 34억 원을 제외한 4,966억 원만큼 자본금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회사의 차입한도는 4,966억 원의 30%인 1,489억 원(억 원 미만 절사)만큼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후 회사의 차입한도는 9,911억 원(기존 회사의 차입한도 8,422억 원 더하기 금번 유상증자로 증액되는 1,489억 원의 차입한도)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차입한도 증액 규모 및 유상증자 후의 차입한도는 최종 발행가액 및 이에 연동된 모집 가액이 결정된 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 관련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3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신용대출약정과 단기사채 인수계약 및 미래 배당수익과 이자수익 등 투자법인 들로부터 향후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등을 고려 시 회사는 적절한 재무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및 하남 데이터센터 매입 관련 투자약정, 미래의 잠정 신규투자 등으로 인해 차입금이 차입한도까지 증가할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과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및 차입한도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6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총차입금(A)	4,100	4,064	4,882	2,709
자본금 ¹	28,074	28,074	24,489	24,489
차입한도(자본금*30%) (B)	8,422	8,422	7,346	7,346
잔여차입한도(B)-(A)	4,322	4,358	2,464	4,637

¹ 회사는 2021년 8월 12일에는 보통주 32,653,062주를 주당 12,050원에 발행하였으며, 주식 발행비용 20억원은 자본에서 차감함. 2023년 8월 9일에는 보통주 30,935,808주를 주당 11,670원에 발행하였으며, 주식 발행비용 25억원은 자본에서 차감함.

(출처 : 각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회사 제시 자료)

(4) 금리 상승 관련 위험 (회사)

회사가 약정 및 발행한 신용대출 및 단기사채는 변동 금리부 대출 및 사채입니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회사가 신용대출 및 단기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증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신규 사업에 대한 경쟁 심화 관련 위험

회사는 유료도로와 터널, 교량, 철도, 항만, 도시가스, 디지털(데이터센터) 및 기타 다른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하는 사업시행자에 투자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 다른 컨소시엄 및 회사와 경쟁을 합니다. 대형 건설사와 금융 투자자 등이 포함된 이 경쟁자들은 한국에서 사업에 입찰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현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풍부한 금융재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조건들을 걸고서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회사는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회사가 과거에 획득했던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회사의 경쟁자의 일부는 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운용보수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유리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회사는 사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달성 못 하거나 회사의 투자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들에게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6) 업무 위탁 관련 위험

회사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 관리하며, 향후에도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의존합니다.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 ①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은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⑥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2.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4.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⑦ 투자회사등은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 관리하며, 이에 향후에도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다

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맥쿼리자산운용(주)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이고, 한국증권금융(주)는 회사의 신탁업자이며, 삼정케이피엠지에이에이에스(주)는 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업무수탁자")를 통제하지 않으며 업무수탁자의 이어나 직원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업무수탁자 각각과 맺은 계약에 의해서만 업무수탁자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탁자가 자신의 사업정책, 인사, 업무수행에 대해 내리는 결정들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탁자가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업무수탁자가 사임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신속하게 만족스러운 후임자를 지명하지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회사의 투자 활동, 자산 운용, 자금 관리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7) 회사의 합병 및 피흡수 합병 제한 관련 위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만 합병 또는 피합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합병할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합병 및 피흡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투자 포트폴리오 가치의 증대를 이루지 못하고, 관련 거래에 따른 주주의 투자가치 증대 기회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8) 투자회사의 해산 관련 위험

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53조 제1항제 4호에 따라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50억원)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최저 순자산액 미달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가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해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② 발기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 그 투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최저액(이하 "최저순자산액"이라 한다)

다. 기타위험

(1) 주가하락 위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 주식의 가격은 금리 변동, 주식시장 수급 상황 및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적인 사건 등 외부 요인과 회사 관련 지표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투자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의해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지만, 본 기준가격과 유가증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는 향후 회사 가치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판단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 및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 변경 관련 위험

2019년 2월 28일에 추가로 개정된 회사와 집합투자업자간의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조항에 따라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90일 전 사전 서면통보에 따라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 요구됩니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의에 반대하는주주들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체결한 신용대출약정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리은행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회사가 집합투자업자의 고의적 위법행위, 중대한 태만 또는 연속적인 16분기 중에 최소한 14분기동안 성과 미달(자산운용위탁계약의 조건에 따라 결정됨)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 직전 4개 분기의 운용보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 위약금으로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해지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해관계 상충 관련 위험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발기인들에 의해 지명되었고 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합니다. 맥쿼리자산운용(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법인이사로 선출되었으며, 동법과 회사의 정관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결이 어려운 이해 상충 관련 상황이나 그에게 주어진 특정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회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신용 관련 위험

회사의 투자법인들 중 대다수는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을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것이며, 정부가 고유의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실시협약 하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등 특수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투자법인들의 영업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에 의한 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또는 법에 반하는 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5)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 기타 고려사항

회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들 외에도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모집(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모집(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가 제한되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이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 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모집(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모집(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날,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8조의4제1항).

다만,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i) 모집(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결정일까지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한 경우. 이 경우 해당 매수 시점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임.

ii)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과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iii)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준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

상기 공매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하는 투자자께서는 향후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된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 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회사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운영기간이 중장기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철도 및 도시가스 사업들은 비교적 독점적인 지위에 있어 경쟁 자산의 등장에 한계가 있으며 자산의 성격상 대체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합니다. 항만 시설의 경우 유료도로 등 타 사업들에 비해 높은 투자 위험에 노출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하남 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전체 면적 및 용량이 약정되어 있어서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기대되고, 계약 미갱신시 임차인의 수입원이 줄어드는 점 및 데이터센터 이용자들이 대규모 자본적 지출 및 이주비를 지출해야 할 수 있는 점 등은 계약 갱신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시켜 주는 요인입니다.

회사는 현재 회사가 투자한 20개의 사업 외에 추가적인 투자를 실행할 수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되므로 현금흐름의 변동성 측면에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회사는 폐쇄형 펀드로서 회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와는 별개로 회사의 투자자는 회사 주식의 매매 시점에 따라 가격변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는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하는 보통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등급평가는 맥쿼리자산운용(주)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외부 평가기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객관적인 등급평가는 아닌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은 다음 6단계로 구분됩니다.

투자위험 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회사가 투자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 대체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며, 예상대로 운영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액 증가 등에 따른 실적 개선 및 부채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현금흐름의 향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의 향상은 회사의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인바, 회사는 "안정적인 장기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투자자"를 적합한 투자자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쿼리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등급	분류기준	상세 기준 ¹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 ² 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¹ 최대손실률 :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가능비율. 다만 신용위험 및 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실제손실이 최대손실률보다 클 수 있습니다.

² 본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맥쿼리자산운용(주)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및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구조 및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함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회사는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서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2006년 3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상장 당시 해외투자자가 용이하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하여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나 과거에 발행되었던 대부분의 GDR이 원주로 전환되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됨에 따라 GDR 상장에 따른 효용성 대비 유지비용을 고려하여 2016년 3월 24일자로 상장폐지 하였습니다.

회사가 기 발행한 주식의 매입 및 매도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가증권 매매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주식의 매매가격은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 주식의 유동성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에 따른 과세는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4년 8월,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기명식보통주 43,140,638주를 모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매

회사는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서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순자산가치 총액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건 별 자산가치의 합계에서 회사의 부채 총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회사의 자산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출채권,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포함합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지분과 대출채권은 각각 취득원가와 상각후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가치의 경우, 순자산가치 총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순자산가치 총액과 주당 순자산가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 및 향후 회사 가치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기간별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의 평가액이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순자산가치(NAV) = (자산총계-부채총계) / 총발행주식수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
기준가격 공시시기	분기별 공시(민간투자법에 의해 매일 공시하는 의무는 면제됨)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자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거 투자자산을 평가합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공정가액으로 평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자산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대출채권	상각후원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 1) 구성 : 대표이사(위원장), 자산운용/관리담당임원, 재무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2) 업무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업무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거래 시 거래 증권회사가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외에 주식거래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	-	-	-	-	-
-	-	-	-	-	-
부과기준		-	-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관련 보수 및 비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동종유형 총 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 · 비용	총 보수 · 비용(피투 자 집합투 자기구 보 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집합투자 기구 (클래스 해당없음)	0.85	-	0.01	0.01	0.87	-	0.04	0.91	0.91	-
지급시기	매분기말 로부터 15 영업일	-	매분기말 이후	매분기말 이후	-	해당없음	-	-	-	-

주1) 집합투자업자보수 : 회사의 정관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회사는 회사의 투자운용에 대하여 운용보수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매년 각 분기가 종료되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운용위탁계약서상 계산방법에 의거하여 산정, 지급됩니다.

주2) 보수율은 2024년 상반기 거래량 가중평균 주당 거래가격으로 산출한 시가총액 대비 2024년 상반기 중 상기 업무위탁기관에 대해 발생한 비용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3) 집합투자업자보수는 2019년 4월 1일부터 변경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회사의 2019년 1월 18일자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표에서 집합투자업자보수 0.85%는 변경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주4) 회사는 집합투자자기구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 외에 별도의 종류(Class)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동종유형 집합투자자기구 총 보수비용 비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5) 총보수 및 비용(피투자집합투자자기구 보수포함)의 경우, 회사는 재간접펀드가 아닌바, 피투자 집합투자자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총보수 및 비용을 기재

또한, 다음의 내역으로 유상증자 대표주관수수료 및 인수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구분	수수료 수취인	수수료율 및 수취인별 비중
대표주관수수료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2% 중 40% (모집총액의 0.08%)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2% 중 30% (모집총액의 0.06%)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2% 중 17% (모집총액의 0.034%)
	삼성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2% 중 13% (모집총액의 0.026%)

구분	수수료 수취인	수수료율 및 수취인별 비중
인수수료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3% 중 40% (모집총액의 0.12%)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3% 중 30% (모집총액의 0.09%)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3% 중 17% (모집총액의 0.051%)
	삼성증권 주식회사	모집총액의 0.3% 중 13% (모집총액의 0.039%)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투자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는 회사의 주가 및 주식 수, 투자 약정액, 외부 차입금액, 현금 및 현금등가물 등에 연동됩니다. 단, 회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서 주식시장 개장시간 동안 회사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변하고, 회사는 여러 차례 차입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를 실행하였고 앞으로도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의 주식 수, 투자 약정액, 외부 차입금액, 현금 및 현금등가물 또한 계속해서 변동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시, 투자자들이 미래에 부담하게 될 총 보수 및 비용을 미리 산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투자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중 가장 큰 부분인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되는 운용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용보수 (Management fee)

운용보수는 분기별로 후불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NIV+C) \times 0.85\%] \times (N/365)$$

여기서,

NIV = 해당 분기의 순투자가치

C = 회사, 회사가 완전 소유하는 회사, 신탁(Trusts) 또는 기타 법인이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제외한) 투자자산에 대해 장래 투자를 확정된 약정금액 총액

N = 해당분기의 일자수

회사의 해당분기의 순투자가치(NIV)의 계산은 ① 회사의 시장가치와 ② 외부차입금을 더하고 ③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을 차감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만일 회사의 순차입금(② 외부차입금에서 ③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을 차감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 이를 0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① 회사의 시장가치

a. 어느 분기에 대하여 해당 분기의 매 거래일 동안 발행되어 있는 매일 거래종료시점의 평균주수에, 동 거래일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량 가중평균 주당 거래가격을 곱한 가치;

b. 주식의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주식 상장폐지일이 포함된 해당 분기 동안 주식 상장 폐지일 까지 발행되어 있는 매일 거래 종료 시점의 평균주수에 동 거래일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량 가중평균 주당 거래가격을 곱한 가치;

② 외부차입금액

분기말로 회사 및 회사의 완전소유회사, 신탁(Trusts) 또는 기타 법인의 외부차입금액 (그러나 회사가 지배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지분을 특별하게 보유한 운영 또는 프로젝트 회사, 신탁 또는 기타 법인이 보유한 차입금은 제외함).

③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

분기말일자로 회사 및 회사의 완전소유회사, 신탁(Trusts) 또는 기타 법인이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에 투자한 금액 총계 (그러나 회사가 지배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지분을 특별하게 보유한 운영 또는 프로젝트의 회사, 신탁 또는 기타 법인이 보유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은 제외함).

운용보수는 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분기의 운용보수의 일부 혹은 전부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주식매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발행되는 회사 주식수는 집합투자업자가 회사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로 한

운용보수액을 동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 동안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회사의 모든 주식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합니다.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단위: 억원)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 주기	지급 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순투자가치 및 투자약정액	상기 나. 내용 참고	0.85	매 분기	매 분기말로부터 15영업일 이내	99	104	115	109

주) 상기 한도(%) 0.85%는 운용보수율을 의미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회사는 매년 중간분배금 및 결산분배금을 지급해 왔으며, 향후에도 매년 2회 분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표는 2002년 12월 31일 이후 2024년 06월 30일까지의 회사의 분배금(원본반환 포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기준일	총 분배금 (백만원)	주당 분배금 (원)
2002년 12월 31일	-	-
2003년 6월 30일	1,700.0	185.7
2003년 12월 31일	3,221.8	85.5
2004년 6월 30일	13,887.6	212.7
2004년 12월 31일	18,879.3	127.1
2005년 6월 30일	49,241.2	271.4
2005년 12월 31일	53,550.0	223.1
2006년 6월 30일	64,698.0	200.0
2006년 12월 31일	71,167.8	220.0
2007년 6월 30일	71,167.8	220.0

분배금 지급 기준일	총 분배금 (백만원)	주당 분배금 (원)
2007년 12월 31일	71,167.8	220.0
2008년 6월 30일	74,402.7	230.0
2008년 12월 31일	현금분배	74,413.5
	주식분배 ¹	39,455.2
	총계	113,868.7
2009년 6월 30일	76,235.6	230.0
2009년 12월 31일	53,033.5	160.0
2010년 6월 30일	53,033.5	160.0
2010년 12월 31일	60,988.5	184.0
2011년 6월 30일	54,690.8	165.0
2011년 12월 31일	54,690.8	165.0
2012년 6월 30일	72,921.1	220.0
2012년 12월 31일	86,179.4	260.0
2013년 6월 30일	69,606.5	210.0
2013년 12월 31일	100,432.2	303.0
2014년 6월 30일	63,971.7	193.0
2014년 12월 31일	74,578.4	225.0
2015년 6월 30일	69,606.5	210.0
2015년 12월 31일	84,190.7	254.0
2016년 6월 30일	66,291.9	200.0
2016년 12월 31일	66,291.9	200.0
2017년 6월 30일	82,864.8	250.0
2017년 12월 31일	101,222.9	290.0
2018년 6월 30일	108,203.7	310.0
2018년 12월 31일	108,901.8	312.0
2019년 6월 30일	122,165.5	350.0
2019년 12월 31일	122,165.5	350.0
2020년 6월 30일	125,656.0	360.0
2020년 12월 31일	133,989.3	360.0
2021년 6월 30일	137,711.2	370.0
2021년 12월 31일	153,841.3	380.0
2022년 6월 30일	153,841.3	380.0

분배금 지급 기준일	총 분배금 (백만원)	주당 분배금 (원)
2022년 12월 31일	157,889.8	390.0
2023년 6월 30일	155,865.5	385.0
2023년 12월 31일	169,954.7	390.0
2024년 6월 30일	165,596.9	380.0

¹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주당 0.02464주를 주식배당함

주) 상기의 분배금은 원본반환을 포함한 금액임.

주)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자본시장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는 주주들에게 이익분배 또는 이익초과분배의 형태로 분배를 결의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초과분배는 해당 회계기간 중 회계상의 이익을 초과하여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분배금입니다. 그러한 이익초과분배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원금회수분 및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통해 유입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국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소득공제를 위해 주주들에게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분배가능이익 중 큰 금액을 분배금으로 선언하고 지급할 계획이나, 이사회 결의 또는 회사의 향후 분배정책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배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로 필요 시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통해 주주들에게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회계기간 중 비정상적인 비용발생으로 회사의 분배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된 경우, 회사는 주주들이 받게 될 현금분배금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주들에게 이익초과분배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차입금 설정비용과 같이 비반복적이거나 일회성의 항목이 위에서 언급한 비정상적인 비용발생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회계기간 중 이익항목이 회사의 분배가능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회계기간 중 이익의 일부를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 회사는 특정한 회계기간 중 분배가능이익의 90%이하로 분배하는 경

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분배정책은 회사의 적정 운용자금을 유지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분배가능이익의 실현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인 50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 기술한 바는 현재 회사의 분배정책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분배정책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예: 무분배의 선언 내지는 분배 축소). 분배에 대한 결의는 회사 이사회의 독자적인 권한이며 분배의 형태, 횟수, 금액 등은 회사의 이익, 재무상태, 영업성과, 계약상의 제약조건,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할 것입니다.

회사는 분배금을 원화로 지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익금 전액을 주식으로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주식분배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전에 상기 목적을 위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주식분배를 결정한다면 주주들은 현금 대신에 주식의 형태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위탁수수료나 각종 인지대와 같은 거래비용의 부담 없이 추가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주식분배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가격계산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시의 주식의 가격에 의거할 것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거래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1)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간	최근 1년 (2023.7.1. ~ 2024.6.30.)	최근 2년 (2022.7.1. ~ 2024.6.30.)	최근 3년 (2021.7.1. ~ 2024.6.30.)	최근 5년 (2019.7.1. ~ 2024.6.30.)	설정일 이후 (2006.3.15. ~ 2024.6.30.)
집합투자지구	3.87%	4.07%	6.67%	7.31%	11.14%
참고지수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수익률 변동성	1.20%	2.03%	1.86%	1.84%	2.00%

주1)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증가상승률 및 분배금수익률을 합산한 수치이며, 분배금은 분배락일에 재투자를 가정함

주2)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 전의 수익률임

주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명시된 각 기간별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과는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주4) 회사는 한국의 유일한 상장된 공모 인프라펀드로서 적절한 비교지수가 없어 참고지수 표시를 생략함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임

주6) 과거의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주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 주식의 가격은 금리 변동, 주식 시장 수급 상황 및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적인 사건 등 외부 요인과 회사 관련 지표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 투자자는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수익률 변동에 노출될 수 있음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간	2023.7.1. ~ 2024.6.30.	2022.7.1. ~ 2023.6.30.	2021.7.1. ~ 2022.6.30.	2020.7.1. ~ 2021.6.30.	2019.7.1. ~ 2020.6.30.
집합투자지구	3.87%	4.28%	12.06%	14.76%	2.13%
참고지수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1)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주가상승률 및 분배금수익률을 합산한 수치이며, 분배금은 분배락일에 재투자율 가정함

주2)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임

주3)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명시된 각 기간별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주4) 회사는 한국의 유일한 상장된 공모 인프라펀드로서 적절한 비교지수가 없어 참고지수 표시를 생략함

주5) 과거의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주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 주식의 가격은 금리 변동, 주식 시장 수급 상황 및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적인 사건 등 외부 요인과 회사 관련 지표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 투자자는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수익률 변동에 노출될 수 있음

나. 과세

아래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투자회사 및 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적용되는 본 문서 작성일 현재의 관련 세법 규정을 요약한 것으로, 투자자의 과세 문제에 관한 법률 또는 세무의견은 아니므로 회사에 투자할 것을 고려하는 투자자는 투자와 관련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각자 전문가의 자문 및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결의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배당소득공제)됩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① 개인 거주자에 대한 과세

거주자인 개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한편, 개인투자자의 연간이자 및 배당소득(투자회사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포함)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개인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 따라 투융자 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를 통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는 투자금액 1억원 한도에서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거주자가 2025년 1월 1일 전에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개인거주자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말합니다. 즉, 주주 1인과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i)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그 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 주식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또는 (ii)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장외에서 양도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투자회사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 그 외의 경우에는 22%(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27.5%,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3%(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0%)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35%의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음)가 과세됩니다. 회사 주식 관련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경우 주식 양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② 내국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a. 내국법인인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b. 내국법인인 주주가 받는 배당금액 및 주식양도차액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고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c. 증권거래세는 개인주주와 동일합니다.

③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2%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22%와 당해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회사를 비롯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가 당해 회사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11%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양도차액의 2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중 낮은 금액이 과세됩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상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면세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인 경우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조약에 의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 유가증

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세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과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3) 금융투자소득 신설 및 개정안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 2020.12.29.)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었으며,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재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그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아닌 거주자인 개인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현재 비과세되나,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2024년 7월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것으로 발표된 바 있으므로, 추후 확정되는 개정 세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과세방법, 세율 등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5. 발기인 ·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주소	소유주식수	소유금액	결격요건 해당여부
Macquarie UK Holdings Limited (MUKHL)	Ropemaker Place, 28 Ropemaker St., London, EC2Y 9HD, United Kingdom	200만주	100억원	해당하지 않음

※ 발기인의 법인명은 Macquarie Internationale Holdings Limited에서 MUKHL로 변경되었음. 위 소유주식수는 2002년 12월 발기설립 당시의 보유주식수이며 2024년 6월 30일 기준 총 15,726,407주를 보유중
(출처: 삼정케이피엠지이에이에스(주))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및 2인 이상의 감독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의 감독이사는 총 3인입니다.

1) 김화진 감독이사

김화진 감독이사는 2019년 3월 22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감독이사로 최초 선출되었으며, 2022년 3월 25일에 재선임되었습니다. 김화진 감독이사는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부 및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졸업 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미시간대학교 로스쿨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법학자입니다. 김화진 감독이사는 상법, 자본시장법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직을 수행하였고,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전문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화진 감독이사는 다양한 저서, 논문, 미디어 논평 및 칼럼을 작성/편저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 가치제고에 대해 대외적으로도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남태연 감독이사

남태연 감독이사는 2022년 3월 25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감독이사로 최초 선출되었습니다. 남태연 감독이사는 동국대학교 회계학 학사 및 워싱턴대학교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남태연 감독이사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국제조세 분야, 이전가격 분야 및 세무조사/분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안진회계법인(Arthur Andersen Seoul Co.)과 쌍용투자증권 국제금융부에서 다양한 산업분석 및 기업분석 업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남태연 후보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암스테르담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교류 근무를 통해 글로벌 경험을 축적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세청 국제조세법규정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분야의 법규 정비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3) 문재도 감독이사

문재도 감독이사는 2023년 3월 24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감독이사로 최초 선출되었습니다. 문재도 감독이사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과 학사 및 정책학과 석사 학위

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문재도 감독이사는 에너지, 통상,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제25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수동기계산업과, 자원정책과, 전기위원회 등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문재도 감독이사는 2013년부터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의 보직을 거치며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9년부터 2024년 4월까지 5년간 대한민국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의 회장직을 맡아 수소산업과 관련된 정책 개정,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누구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전 5년간, 금융사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경영관리 또는 감독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그의 능력과 관련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2024년 상반기 중에 지급된 감독이사의 보수는 총 108백만원입니다. 현재 각 감독이사의 보수한도는 월 최대 8백만원입니다. 감독이사에게는 급여를 제외한 퇴직금, 위로금 등 기타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를 제외한 분기 재무제표상의 수치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25기(2023.1.1. ~ 2023.12.31.)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24기(2022.1.1. ~ 2022.12.31.)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23기(2021.1.1. ~ 2021.12.31.)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22기(2020.1.1. ~ 2020.12.31.)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21기(2019.1.1. ~ 2019.12.31.)	삼일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천원)

항 목	제26기 (2024.6.30.)	제25기 (2023.12.31.)	제24기 (2022.12.31.)	제23기 (2021.12.31.)
운용자산	2,482,682,629	2,499,408,369	2,305,832,038	2,193,958,151
기타자산	911,175,378	839,735,894	742,257,995	628,767,768
자산총계	3,393,858,007	3,339,144,263	3,048,090,033	2,822,725,919
부채총계	430,437,782	427,253,238	507,082,950	289,212,494
자본금	2,807,422,957	2,807,422,957	2,448,936,528	2,448,936,528
이익잉여금	155,997,268	104,468,068	92,070,555	84,576,897
자본총계	2,963,420,225	2,911,891,025	2,541,007,083	2,533,513,425
부채 및 자본총계	3,393,858,007	3,339,144,263	3,048,090,033	2,822,725,919
운용수익	257,472,277	396,084,479	376,625,957	348,352,409

항 목	제26기 (2024.6.30.)	제25기 (2023.12.31.)	제24기 (2022.12.31.)	제23기 (2021.12.31.)
운용비용	35,988,349	69,931,668	61,449,683	51,681,924
매매회전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천원)

항 목	제26기 (2024.6.30.)	제25기 (2023.12.31.)	제24기 (2022.12.31.)	제23기 (2021.12.31.)
운용자산	2,482,682,629	2,499,408,369	2,305,832,038	2,193,958,151
현금및예치금	21,535,312	23,502,154	27,546,915	53,509,690
대출금	1,688,806,728	1,703,565,626	1,707,252,696	1,628,613,767
지분증권	772,340,589	772,340,589	571,032,427	511,834,694
기타자산	911,175,378	839,735,894	742,257,995	628,767,768
미수이자	902,663,678	834,022,763	735,892,257	621,743,660
미수금	2,348,117	2,348,117	2,350,112	2,347,967
선급비용	3,389,463	1,204,136	1,894,576	2,581,947
선급금	2,774,120	2,160,878	2,121,050	2,094,194
자산총계	3,393,858,007	3,339,144,263	3,048,090,033	2,822,725,919
부채	430,437,782	427,253,238	507,082,950	289,212,494
미지급금	1,268	1,775	1,407	1,531
미지급운용수수료	12,103,713	11,981,395	9,898,118	11,995,440
기타부채	8,986,184	9,692,642	11,118,032	6,701,036
사채	309,346,617	309,221,262	348,914,226	250,408,871
장기차입금	100,000,000	96,356,164	137,151,167	20,105,616
부채총계	430,437,782	427,253,238	507,082,950	289,212,494
자본금	2,807,422,957	2,807,422,957	2,448,936,528	2,448,936,528
이익잉여금	155,997,268	104,468,068	92,070,555	84,576,897
자본총계	2,963,420,225	2,911,891,025	2,541,007,083	2,533,513,425
부채 및 자본총계	3,393,858,007	3,339,144,263	3,048,090,033	2,822,725,919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항목	제26기 (2024.1.1. ~ 2024.6.30.)	제25기 (2023.1.1. ~ 2023.12.31.)	제24기 (2022.1.1. ~ 2022.12.31.)	제23기 (2021.1.1. ~ 2021.12.31.)
운용수익	257,472,277	396,084,479	376,625,957	348,352,409
이자수익	146,457,700	289,682,325	268,303,082	235,380,636
배당수익	111,010,564	106,282,295	108,033,001	112,761,812
기타운용수익	4,013	119,859	289,874	209,961
운용비용	35,988,349	69,931,668	61,449,683	51,681,924
운용수수료	24,195,880	44,774,366	44,340,538	41,607,437
자산보관수수료	289,125	534,009	501,729	454,143
사무관리수수료	180,703	333,756	313,581	283,839
이자비용	9,690,779	21,555,205	13,615,558	7,079,412
기타운용비용	1,631,862	2,734,332	2,678,277	2,257,093
당기순이익	221,483,928	326,152,811	315,176,274	296,670,48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십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금액	주수	금액	주수	금액	주수	금액
2006년	240,076,919	1,258.7	83,413,285주	563.6	-	64.7	323,490,204	1,757.6
2007년	323,490,204	1,757.6	-	-	-	104.7	323,490,204	1,653.0
2008년	323,490,204	1,653.0	-	-	-	21.5	323,490,204	1,631.5
2009년	323,490,204	1,631.5	7,969,137	39.5	-	-	331,459,341	1,671.0
2010년	331,459,341	1,671.0	-	-	-	-	331,459,341	1,671.0
2011년	331,459,341	1,671.0	-	-	-	-	331,459,341	1,671.0
2012년	331,459,341	1,671.0	-	-	-	-	331,459,341	1,671.0
2013년	331,459,341	1,671.0	-	-	-	-	331,459,341	1,671.0
2014년	331,459,341	1,671.0	-	-	-	-	331,459,341	1,671.0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금액	주수	금액	주수	금액	주수	금액
2015년	331,459,341	1,671.0	-	-	-	-	331,459,341	1,671.0
2016년	331,459,341	1,671.0	-	-	-	-	331,459,341	1,671.0
2017년	331,459,341	1,671.0	17,584,995	144.6	-	-	349,044,336	1,815.6
2018년	349,044,336	1,815.6	-	-	-	-	349,044,336	1,815.6
2019년	349,044,336	1,815.6	-	-	-	-	349,044,336	1,815.6
2020년	349,044,336	1,815.6	23,148,149	241.9	-	-	372,192,485	2,057.5
2021년	372,192,485	2,057.5	32,653,062	391.4	-	-	404,845,547	2,448.9
2022년	404,845,547	2,448.9	-	-	-	-	404,845,547	2,448.9
2023년	404,845,547	2,448.9	30,935,808	358.5	-	-	435,781,355	2,807.4
2024년 상반기	435,781,355	2,807.4	-	-	-	-	435,781,355	2,807.4

주) 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공모 펀드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발행주식수는 435,781,355주이며, 현재 2024년 10월 중 주금 납입 일정으로 추가모집(매출)을 예정 중에 있음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할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미발행출자지분의 총수
40억주(4,000,000,000주)	435,781,355주	3,564,218,645주

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구분	종류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총액	비고
회사 주식	무액면, 기명식	435,781,355주	2,807,422,957,388원	

다. 집합투자기구의 차입에 관한 사항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5에 의거, 자본금의 30%까지 차입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개별재무제표 기준 회사의 차입부채는 총 4,100억원(원금기준)이며, 이는 고정금리 회사채 2,000억원과 2,500억원 한도의 신용대출 인출액 1,000억원 및 3,922억원 한도의 단기사채 인출액 1,1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차입처 (대주단)	약정한도액	차입 현황
(주)국민은행	20,000	-
하나손해보험(주)	20,000	8,000
교보생명(주)	50,000	20,000
농협생명보험(주)	50,000	25,000
(주)경남은행	30,000	12,000
농협은행(주)	20,000	8,000
신용협동조합	60,000	27,000
합계	250,000	100,000

(2) 회사채 현황

(단위: 백만원, %)

종목명	발행금액	이자율	발행일	상환일	신용등급
제2-2회 무보증사채(7년만기)	100,000	3.205	2018년 06월 11일	2025년 06월 11일	AA
제3회 무보증사채(5년만기)	100,000	4.406	2023년 06월 12일	2028년 06월 12일	AA

회사는 제2-2회 무보증사채 1,000 억원 및 제3회 무보증사채 1,000억원을 공모의 방식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모든 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됩니다.

(3) 단기사채 현황

2023년 9월 11일 회사는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와 총 3,922억원 한도의 단기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기사채 인수계약은 2023년 9월 11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 유효하며 회사는 총 3,922억원의 발행한도 내에서 단기사채를 회차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고(단,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는 인수회사들이 제공한 한도대출 인출 또는 전매제한 조치된 단기사채 발행 가능), 각 인수회사는 개별 설정된 인수한도 내에서 회사가 발행하는 단기사채를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간	최근 1년 (2023.7.1. ~ 2024.6.30.)	최근 2년 (2022.7.1. ~ 2024.6.30.)	최근 3년 (2021.7.1. ~ 2024.6.30.)	최근 5년 (2019.7.1. ~ 2024.6.30.)	설정일 이후 (2006.3.15. ~ 2024.6.30.)
집합투자기구	3.87%	4.07%	6.67%	7.31%	11.14%
참고지수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수익률 변동성	1.20%	2.03%	1.86%	1.84%	2.00%

주1)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주가상승률 및 분배금수익률을 합산한 수치이며, 분배금은 분배락일에 재투자율 가정함

주2)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 전의 수익률임

주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명시된 각 기간별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과는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주4) 회사는 한국의 유일한 상장된 공모 인프라펀드로서 적절한 비교지수가 없어 참고지수 표시를 생략함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임

주6) 과거의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주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 주식의 가격은 금리 변동, 주식 시장 수급 상황 및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적 사건 등 외부 요인과 회사 관련 지표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 투자자는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수익률 변동에 노출될 수 있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간	2023.7.1. ~ 2024.6.30.	2022.7.1. ~ 2023.6.30.	2021.7.1. ~ 2022.6.30.	2020.7.1. ~ 2021.6.30.	2019.7.1. ~ 2020.6.30.
집합투자기구	3.87%	4.28%	12.06%	14.76%	2.13%

기간	2023.7.1. ~ 2024.6.30.	2022.7.1. ~ 2023.6.30.	2021.7.1. ~ 2022.6.30.	2020.7.1. ~ 2021.6.30.	2019.7.1. ~ 2020.6.30.
참고지수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주1)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주가상승률 및 분배금수익률을 합산한 수치이며, 분배금은 분배락일에 재투자를 가정함
- 주2)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임
- 주3)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명시된 각 기간별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 주4) 회사는 한국의 유일한 상장된 공모 인프라펀드로서 적절한 비교지수가 없어 참고지수 표시를 생략함
- 주5) 과거의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주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 주식의 가격은 금리 변동, 주식 시장 수급 상황 및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적인 사건 등 외부 요인과 회사 관련 지표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 투자자는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수익률 변동에 노출될 수 있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4년 6월 30일 기준 회사의 투자자산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출채권,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그리고 기타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십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대출채권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국내	772 (22.8%)	-	-	-	-	-	-	-	-	22 (0.6%)	1,689 (49.8%)	911 (26.8%)	3,394 (100%)
국외	-	-	-	-	-	-	-	-	-	-	-	-	-
합계	772 (22.8%)	-	-	-	-	-	-	-	-	22 (0.6%)	1,689 (49.8%)	911 (26.8%)	3,394 (100%)

주)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맥쿼리자산운용(주)
주요 주주	Macquarie Infrastructure and Real Assets (Europe) Limited (맥쿼리자산운용(주)의 보통주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주요 주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A동 18층(공평동, 센트로폴리스) (우:03161) 전화: 02-3705-8565
회사연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2년 10월 17일 "맥쿼리인프라스트럭처전문운용(주)"설립 2) 2002년 12월 13일 한국도로인프라투자회사와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 3) 2002년 12월 23일 회사명을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운용(주)"로 변경 4) 2005년 11월 11일 회사명을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주)"로 변경 및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취득 5)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업(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 운용업무에 한함) 인가 취득 6) 2010년 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업 인가 변경(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 운용업무에 한한다는 인가조건 취소) 7) 2012년 2월 맥쿼리그룹이 신한금융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던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주)의 보통주 50%를 매입하여 의결권을 기준으로 100% 주주 지위 확보 및 회사명을 "맥쿼리자산운용(주)"로 변경 8) 2013년 1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업 인가 추가 취득 9) 2015년 10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현재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10) 2020년 3월 2일 계열회사이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현재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인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유)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현재 현재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추가

위 기술된 가. 회사 개요는 2024년 6월 30일 기준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주요 업무

1) 업무위탁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 투자, 사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본시장법, 상법 등 기타 관련 법률과 회사의 정관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서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위탁계약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과 관련된 투자를 결정하고 회사 이사회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은 정관, 투자의 기본방침, 투자지침, 관련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자산운용위탁계약의 개요

①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조건에 따른 해지 또는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은 유효합니다.

② 운용보수

※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집합투자업자의 권한

회사의 자산운용위탁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정관 및 회사로부터의 서면 지침에 명시된 계약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는 항상 다음의 권한을 포함하여(단, 다음의 권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회사의 자산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a. 회사 대리인, 중개인, 딜러 또는 컨설턴트 등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지침을 전달하는 것
- b. 집합투자업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체결한 계약, 약정 또는 거래에 회사가 구속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러한 계약, 협약, 거래를 이행하는 것
- c. 유가증권이나 투자의 매매, 처분을 지시하는 것
- d. 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3) 집합투자업자의 비용 및 보상

회사는 아래 나열된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여 (이에 제한되지 않음) 집합투자업자가 회사를 위해 비용을 집행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자산운용위탁계약상의 권한 및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하고 문서로 정리된 제반비용들을 지불, 보장

또는 환불하고 보상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 ① 투자유가증권의 거래보수(들)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의 취득, 처분, 보험, 보관 및 거래와 관련한 비용
- ② 회사에 대한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담보에 대한 비용 및 헷지 비용 및 차입 이자를 포함하여 은행에 지급하는 보수
- ③ 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한 비용 (주권 예치 포함) 및, 회사의 상장과 관련된 비용 (신주 등의 발행과 관련한 해당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 포함)
- ④ 한국거래소에 회사의 상장 또는 회사 주식의 공식 호가를 위한 경비 및 비용 및 여하한 한국거래소의 규율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 ⑤ 회사에 대한 청구, 분쟁 또는 소송과 관련한 비용
- ⑥ 법 또는 규제기관의 요청 또는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 ⑦ 투자유가증권의 예치 및 결제에 대한 비용
- ⑧ 투자유가증권 가격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
- ⑨ 주주총회의 개최와 관련한 비용, 주주의 결의 및 주주와의 통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⑩ 민간투자법, 정관 및 투자설명서에 따라 주주에 대한 통지와 관련한 비용
- ⑪ 회사의 대리인, 계약자 및 고문(법률 고문 및 금융 고문 포함)의 선임과 관련한 보수 및 비용
- ⑫ 회사 및 회사 자산의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기타 비용

집합투자업자는 위와 같은 비용을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및 다른 법인을 대신하여 취득한 투자 또는 취득할 투자와 관련한 비용의 경우, 이를 각각의 투자비율에 상응하도록 배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회사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표 및 대리인, 그리고 계약자들이 운용협약의 위반 또는 중대한 태만, 사기,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의해 발생시킨 비용을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하거나 자산운용위탁계약상의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 및 간접적인 비용(완전보상기준으로 법률 비용 및 손실을 포함)을 보상할 것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사무실 임대료, 컴퓨터 사용료, 급여,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간접비용 및 일반운영비용 등과 같은 내부적 행정 비용에 대하여는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의무 및 책임

①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 a. 회사를 대신해서 투자 및 투자회수 기회의 발굴, 평가 및 실행하는 업무
- b.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평가, 운용 및 개발하는 업무 (보험관련 업무 포함)
- c. 회사를 대신해서 투자대상 회사의 이사를 추천하고 임명되도록 하는 업무
- d.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업무
- e.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자본조달계획의 실행 및 자산의 개발 및 유지업무를 감독하는 업무
- f. 회사가 관련 법령 및 규정상의 요구사항(회사를 대리하여 전문가 및 기술자문을 고용하는 업무를 포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일일 업무, 행정사항, 회계 및 보고의무에 관여하는 업무
- g. 회사가 관련 법률 및 계약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업무
- h.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 자산의 평가를 수행하거나 수행토록 하는 업무
- i. 관계 법령 및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회사의 감사 받은 연간 회계보고서 및 감사 받지 않은 반기 회계보고서를 준비하는 업무
- j.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및 납부금 등의 계산 및 지급을 준수하는 업무
- k. 투자를 포함한 회사 자산 및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관련 법령상 필요한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주들과의 관계 및 의사소통을 관리하는 업무
- l. 투자대상회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문 및 기타 전문가 등을 추천, 제공, 확보하는 업무
- m. 회사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차입금 및 자금(주식발행을 통한 증자)의 조달과 관련된 의견 및 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행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투자설명서(prospectus 또는 offering memorandum), 기타 공시서류 및 관련 문서의 작성, 검토, 배포하는 등의 업무
- n. 자본 증가 및 자본 감소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조언하는 업무

- o. 회사의 은행계좌 및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는 계좌를 개설하고, 폐쇄하며,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고 인출하는 것을 포함)
- p. 분배금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 조언하는 업무
- q.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의 수탁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업무
- r. 회사가 정당하게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상 집합투자업자의 책임과 의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타 업무

자산운용위탁계약, 정관 및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능 또는 의무 사항들 중의 일부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면,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그런 업무를 위탁하거나 일반사무관리회사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법률, 규칙 및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집합투자업자의 활동, 회사의 투자상황, 회사의 자산, 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회사에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 a.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b.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에 1회 이상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투자회사로서 3개월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금융투자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는 경우 우편으로 제공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c.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회사의 정관, 또는 증권신고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d. 집합투자업자가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

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기준가격(NAV)의 공시

a.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로서 매일 기준가격을 산정하되 공고·게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b. 회사는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사의 분기말 기준가격이 포함된 집합투자 재산에 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 금융투자협회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운용위탁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회사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의 의결로 집합투자업자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90일 이전 서면 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위탁계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의 자가 회사의 자산과 관련하여 임명되는 경우, 회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것이 치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치유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지위를 사임할 수 있으며 회사에 90일 이전 서면통지를 행하여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대체업체 선정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만일 집합투자업자가 이와 같이 사임하는 경우 사임 전에 대체업체를 선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집합투자업자가 사임하는 경우, 사임이 유효하게 되는 시점까지 회사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업체를 찾는 것을 돕는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만약 법인이사로서 집합투자업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집합투자업자가 정관에 따라 주주들에 의하여 법인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규 집합투자업자가 선임되어 정관에 따라 회사의 법인이사로 선택될 때까지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로 계속 행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집합투자업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 중대한 과실, 또는 상장 이후 연속되는 16 분기중 최소 14분기이상 자산운용위탁계약이 정하는 성과에 미달되는 "성과미달"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의 선임을 철회하거나,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회사 법인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하여 자산운용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자산운용위탁계약이 해지된 날까지 지난 4분기간에 걸쳐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된 모든 운용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성과미달"은 첫번째 분기를 포함해서 어느 분기에라도 "성과수익"이 "성과기준수익"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성과수익(PR1)"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PR1 = \left[\frac{B1 - IP1}{IP1} \right]$$

성과수익

PR1 = 상장일에서 해당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성과수익

B1 = 보고대행기관에 의해 산정되거나 보고된 것으로 해당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동안의 (또는 첫번째 분기의 경우 첫번째 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

이나 또는 상장일로부터 첫번째 분기말 거래일(포함)까지의 거래일수 중 적은 거래일 동안의) 매일종가합계지수의 평균치

IP1 = 보고대행기관에 의해 산정되거나 보고된 것으로 최초 거래 이전 상장일자 주식에 대한 최초합계지수값(최초주식공모가격을 나타냄)

"성과기준수익(PBR1)"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PBR1 = (1+X)^{(N1/365)} - 1$$

PBR1 = 상장일부터 현 분기말일까지의 기간동안 성과 기준수익

X = 3.0%와 N1이 나타내는 해당 기간동안 연율화된 물가상승률(N1이 시작하는 날과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와 N1이 끝나는 날

전에 마지막으로 공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사이의 변화를 바탕으로 계산됨)
중 낮은 수치

N1 = 상장일로부터 현 분기말일(당일 포함)까지의 일수

자산운용위탁계약의 규정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의 법인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후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들에 의해 이사로서 재임명이 되지 않더라도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집합투자업자가 선임되고, 법인이사로 임명되는 기간까지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이 지속되게 됩니다.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재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자산운용위탁계약이 유효한 한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재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위탁계약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회사는 맥쿼리 이름 및 로고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위탁계약은 회사의 청산 또는 종료 시 해지될 것입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아래 표는 집합투자업자의 최근 2년간의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입니다. 집합투자업자의 결산일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아래의 요약 정보는 금융위 및 금융투자협회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항 목	제23기말 (2024년 3월 31일 현재)		제22기말 (2023년 3월 31일 현재)	
자 산				
1. 현금및예치금	157,621,517		41,118,352	
2. 관계기업투자자산	219,538		252,704	
3.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81,948		1,173,134	
4. 기타자산	31,332,397		65,532,783	
5. 유형자산	3,985,534		4,992,096	

항 목	제23기말 (2024년 3월 31일 현재)		제22기말 (2023년 3월 31일 현재)	
	6. 무형자산	511,212		467,667
7. 이연법인세자산	9,746,467		1,412,747	
자 산 총 계		204,398,613		114,949,483
부 채				
1. 기타부채	65,333,980		55,541,200	
2. 총당부채	568,498		606,317	
3. 당기법인세부채	27,768,426		3,214,438	
부 채 총 계		93,670,904		59,361,955
자 본				
1. 자본금	3,865,242		3,865,242	
2. 자본잉여금	1,083,015		1,083,015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4. 이익잉여금	105,779,452		50,639,271	
자 본 총 계		110,727,709		55,587,52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04,398,613		114,949,483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항 목	제23기 (2023.4.1. ~ 2024.3.31.)		제22기 (2022.4.1. ~ 2023.3.31.)	
	1. 순이자수익		1,397,731	
(1) 이자수익	1,545,980		1,195,542	
(2) 이자비용	(148,249)		(141,194)	
2. 순수수수료수익		144,293,997		105,111,899
(1) 수수료수익	144,293,997		105,111,899	
3. 외환거래손익		(302,384)		434,092
4. 용역수익		4,073,667		6,912,553
5. 배당금수익		-		-
6. 기타수익		350,495		266,205
7. 기타비용		-		-

항	목	제23기 (2023.4.1. ~ 2024.3.31.)		제22기 (2022.4.1. ~ 2023.3.31.)	
8. 총영업비용			(52,266,696)		(51,466,037)
(1) 종업원급여		(25,102,835)		(24,844,910)	
(2) 지급수수료		(22,931,536)		(22,378,538)	
(3) 기타판매비와관리비		(4,232,325)		(4,242,589)	
9. 영업이익			97,546,810		62,313,060
10. 영업외손익			43,546		(47,716)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97,590,356		62,265,344
12. 법인세비용			(22,450,176)		(15,016,224)
13. 당기순이익			75,140,180		47,249,120
14. 기타포괄손익			-		-
15. 당기총포괄이익			75,140,180		47,249,120

라. 운용자산 규모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의 2024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2,963,420백만원이며, 이는 회사의 주식발행총수에 주당 순자산가치를 곱한 것입니다. 앞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서 언급한대로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거 투자자산을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현재 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당 순자산가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 및 향후 회사 가치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회사>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증권금융(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전화: 02-3770-8800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http://www.ksfc.co.kr

나. 주요 업무

(1) 자산보관위탁계약의 개요

- ① 계약기간: 회사와 한국증권금융(주) 사이에 체결된 자산보관업무 위탁계약은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회사의 청산 종료일까지 유효합니다.
- ② 자산보관보수: 당해 분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각 날에 회사의 위탁자산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후에 당해 분기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회사 위탁자산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에 연 0.02/100을 곱한 금액
- ③ 자산보관보수의 지급시기: 보관보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회사의 지시 및 관련수탁회사의 조치에 따라 지급
 - a.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 b. 회사 정관에 의한 해산
 - c. 자산보관업무 위탁계약의 종료

(2) 주요업무

신탁업자는 회사의 정관,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① 신탁업자는 회사명의로 자산보관계좌를 개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회사를 위하여 취득하기로 결정한 "투자자산"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취득, 위 자산보관계좌에 보관하여야 함
- ② 신탁업자는 위탁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자산과 구분 관리하여야 함
- ③ 신탁업자는 관련 법령 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산의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함
- ④ 신탁업자는 회사 명의로 예금계좌("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신주납입대금, 회사가(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지시한 바와 같이 예금계좌로부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관련수탁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 수수료의 입출금, 영업 외 비용의 입출금, 회사가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전의 입금 및 이에 대한 상환원리금의 출금, 이자 및 배당금의 입·출금 그리고 회사 또는 관련수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거나 지불한 모든 현금을 관리하여야 함
- ⑤ 신탁업자는 회사를 대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위탁자산의 세부사항을 매월마다 작성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제공. 신탁업자는 신탁업자가 제공한 보고서가 회사의 자산내역에 관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제공해 줄 것을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요청하여야 함
- ⑥ 신탁업자는 투자법인으로부터 분배금(배당금, 분배금, 매각대금, 사채의 원리금, 대출원리금, 예금이자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을 추심하고 이를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
- ⑦ 신탁업자는 권리증서를 수령하거나 인도하며 권리증서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⑧ 신탁업자는 중개인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증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책임이 중개인이나 거래상대방에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소송, 가압류, 청구, 비용 및 경비 등에 책임이 없고, 회사의 비용으로 중개인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 ⑨ 신탁업자는 투자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내재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자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통지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신속히 제공하여야 하고, 집합투자업자가 그 통지에 대처할 때까지 투자자산과 관련된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 ⑩ 신탁업자는 현금을 지불 받기 위하여 수표와 어음에 배서하고 지급금액을 추심하여야 함
- ⑪ 회사가 행한 대출채권의 원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피투자회사가 그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신탁업자는 당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최고하는 통지문을 발송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일정한 일자까지 원리금의 추심에 대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신탁업자는 위 통지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산보관위탁계약의 반대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회사의 권리가 상실되어도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⑫ 신탁업자는 여유자산인 회사의 현금을 회사 또는 관련수탁회사에 의하여 별도로 지시 받지 않았거나 또는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⑬ 신탁업자는 ①의 투자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담보취득을 지시 받은 경우 담보를 취득하고 관련 법령 등과 금융관행에 따라 담보물을 관리하여야 함.
- ⑭ 신탁업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신탁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 ⑮ 신탁업자는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음

(3) 의무 및 책임

-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회사정관, 자산보관위탁계약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수탁 받은 집합투자재산과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사이에 거래를 할 수 없으나,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③ 신탁업자는 수탁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신탁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와 관련된 운용을 포함) 또는 자기가 영위하는 집합투자기구 판매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⑥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회사의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⑦ 신탁업자는 법령 및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회 사 명	삼성케이피엠지에이에이에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27층 전화: 02-2112-0001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http://www.kpmg.com/kr

가. 주요 업무

(1)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의 개요

① 계약기간: 회사와 삼성케이피엠지에이에이에스(주) 사이에 체결된 일반사무관리 업무위탁계약은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회사의 청산 종료일까지 유효합니다.

② 일반사무관리보수: 당해 분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각 날에 회사의 순자산가치의 합을 당해 분기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회사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에 연 0.0125/100을 곱한 금액

③ 일반사무관리보수의 지급시기: 관리보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회사의 지시 및 관련수탁회사의 조치에 따라 지급

- a.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 b. 회사 정관에 의한 해산
- c.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의 종료

(2) 주요 업무

- 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② 주주명부 유지
 - ③ 명의개서 대행
 - ④ 주주에 공지사항 통지
 - ⑤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요구 시 관련 주주의 거래계좌에 주식을 예탁
 - ⑥ 관련 법령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주주에게 실물 주식 발행 및 전달
 - ⑦ 주식 거래 기록 유지
 - ⑧ 서류제출 협력, 공공 기관·규제 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기타 관련 조치
 - ⑨ 회사의 용역 제공자에 대한 보상, 비용 및 일반비용의 지불 및 기록
 - ⑩ 회사 자산에 대한 순자산가치(NAV) 산정
 - ⑪ 자산운용보수의 계산
 - ⑫ 세무 관련 신고(부가가치세 및 원천신고서) 작성 및 신고
 - ⑬ 매월마다 신탁업자에 회사 자산의 종류 및 상세사항에 대한 공지 및 확인
 - ⑭ 재무제표, 자산운용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 준비 및/또는 제출 협력
 - ⑮ 회사 현황 유지 협력
- 기타 위 업무의 부수업무

(3) 기타

삼정케이피엠지에이에이에스(주)는 자본시장법상에 허용된 주식등록 서비스 및 명의개서대리 서비스를 위임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계약체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회사의 주식등록기관 및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업무하는 것에 대해 삼정케이피엠지에이에이에스(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4) 업무재위탁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하고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탁 받은 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의무 및 책임

- ①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 받은 업무를 해태하거나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에 의해 행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채권평가회사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채권평가회사>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나이스피앤아이	한국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전화: 02-398-39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전화: 02-2251-1300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http://www.nicepni.com	http://www.koreaap.com

나. 주요 업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하 것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주주총회의 구성

주주총회 부의안건이 있을 경우 회사는 회계년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주주총회의 소집

신탁업자 혹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사전에 서면으로 주주총회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제출하여 이사회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이사회는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사회가 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최소 2주전, 주주들에게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 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주총회의 의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보유한 자는, 이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이러한 주주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제안

을 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주주는 주주총회 통지를 받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연기 주주총회

회사의 정관이나 관련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기 주주총회 재소집의 공고는 편의상 새로운 주주총회일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주주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연기 주주총회의 경우 다른 의결권 요건이 적용되어, 재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의결됩니다.

3) 주주총회의 의결권

회사의 주주는 1주당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의 경우 집중투표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및 정관에 따라 보통결의의 경우, 적어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정관 제26조 제3항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의결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수로써 의결합니다.

주주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본시장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① 이사의 선임

② 집합투자업자 및/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변경이라 함은 새로운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선임 또는 기존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해임을 의미하며,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재선임은 제외)

- ③ 회사의 해산
- ④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에게 지불할 보수 또는 수수료의 인상
- ⑤ 회사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 ⑥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9조에 의한 투자회사의 종류의 변경 등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 ⑦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⑧ 개방형투자회사의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의 변경
- ⑨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지정되는 기타 사항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및 기타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한 결의, 신탁업자의 변경, 자본시장법 제19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29조에 의한 회사 종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등에 관련된 정관변경결의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및 회사의 존속기간의 변경에 대한 정관변경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채택 가능합니다.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대리인은 주주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대리인은 의결권 행사를 위해 위임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주는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가 송부한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회사의 해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수수료의 인상,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회사 존속기간 또는해산사유의 변경, 투자회사의 종류의 변경 등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개방형투자회사의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의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의 경우 간주의결권행사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① 주주에게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따라 본 정관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방법을 포함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③ 간주의결권행사요건의 충족여부 및 주주총회 결과내용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것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타 회사와의 합병, 또는 정관의 특정 조항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① 이 권리를 실행하려면, 주주는 해당 주주총회가 있기 이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은 해당 결의안이 통과된 후 20일 이내에, 처분을 원하는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관련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회사는 주주들에게 어떠한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위에 설명한 주식의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의 항과 같이 주식을 매수할 것이나, 만일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④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의 주식의 주당 매수가격은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자(영업일 기준)로 산정된 주당 순자산가치(NAV)로 결정합니다.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일 15거래일 전부터 주주총회의 의결일 전일까지(만일 영업일이 아닐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 15거래일간의 한국거래소 거래량 가중평균 주당 거래가격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합니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일로부터 35일 이내에 매수대금을 주식매수청구를 한 반대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1) 결산 또는 청산분배금의 지급 청구

① 주주는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결산분배금과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분배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가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을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주주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소멸시효 : 주주가 이익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의 지급개시일(투자매매·중개업자가 주주에게 청산 분배금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주주는 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주주에 관련된 회사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 및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① 회사 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우려되는 경우

② 회사 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의 청산에 따라 법이 정한 보존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주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②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1)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주주의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그 뜻과 사유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이하 "관련신탁회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신탁회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사 및 회계감사인, 또는 다른 관련신탁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 및 채권평가회사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마. 재판관할

(1)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가 회사와의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주주의 주소지 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주주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대표소송

「상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주식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소의 제기를 청구한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위 30일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30일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주권의 발행 및 예탁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위 주식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합니다.

(3)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회사와 일반사무관리회사간에 체결한 일반사무관리계약에 기재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임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삼정케이피엠지에이에이에스(주)는 명의개서대리인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재위임하였습니다)

②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회사의 주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③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상기 ③, ④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4) 회사의 정관 등 회사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사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산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나. 피흡수합병
- 다. 파산
- 라.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마.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위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① 회사는 매 분기 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금융위, 금융투자협회 및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금융위, 금융투자협회는 제출 받은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감사보고서

-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회사 해산일부터 2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② 회계감사인인 회사는 회사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준가격계산서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

여 회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보고서를 금융위, 금융투자협회, 투자매매·중개업자 및 신탁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매 3월마다 또는 펀드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②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상장투자회사로서 3개월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금융투자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는 경우 우편으로 제공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자산운용보고서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ki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신탁업자는 회사의 회계기간 말일,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회사 해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서면으로 우송합니다. 이 경우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장투자회사에 대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는 경우 우편으로 제공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회사의 회계기간 말일,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회사 해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금융위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

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정관변경에 관한 공시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회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하는 외에 모든 주주에게 통지합니다.
 - a.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b.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 c. 회사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의 변경
 - d. 그 밖의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회사 종류의 변경 등 자본시장법 제195조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 2) 위 1) 외의 주주총회 결의 없는 회사 정관 변경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사항

회사는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공시기준가격을 잘못 산정·공시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9. 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매각결정을 한 때 (지배하는 SPC를 통하여 이뤄진 경우 및 금전대여를 포함)
10. 500억원 이상의 투자집행을 하거나 투자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진 때
11. 투자한 사업의 실시협약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때
12. 자금차입이 이루어지거나 사채발행 결정이 있는 때
13. 분기별 기준가격 산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참조)
14. 피투자회사의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시
15.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16.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변경
17.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8. 그 밖에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수시공시의 방법

1.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2. 투자매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4.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Tel: 02-2003-9000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유자회사 http://www.mrkif.c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26, A동18층(공평동, 센트로폴리스)	Tel: 02-3705-8565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87조(의결권등)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바 별도의 공시 없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의결권 행사 방향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a.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 b.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 c.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3) 의결권 행사 방법

- a. 집합투자업자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b. a.의 방법 외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관련 법령에 따라, 맥쿼리자산운용(주)는 회사의 자산운용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는 2023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 사용된 영상제작 업무 관련하여, 맥쿼리 그룹계열사와 AUD 80,000 규모의 이해관계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동 거래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과 내부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신탁업자에 적절히 통지되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해당사항 없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2024년 6월 30일 기준 운용 중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총 규모 4,233,900백만원 중 업무집행사원으로서 406백만원 투자하고 있으며, 회사(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회사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순자산가치 총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배당소득	펀드가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주주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 및 일정요건을 갖춘 공모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상 정의된 사회기반시설로,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등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도시가스 배관, 데이터센터 등
사업시행법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인프라펀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 또는 설정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인프라)투융자회사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동 법률에서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법상 민간제안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기본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의미합니다.
사업시행자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실시협약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의미합니다.
(회사의)투자법인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법인
(회사의)투자자산	회사가 취득한 사업시행법인의 주식, 채권, 대출채권 등
(회사의)투자시설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법인이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
(회사의)투자사업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법인이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회사의)투자금액	회사가 취득한 투자자산의 잔존금액 및 투자자산을 추가적으로 취득하기로 약정한 금액